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이세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5-01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이 세 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5.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조례 중에는 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맞지 않는 경우 등도 많음.

- 이상과 같은 조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④ 헌법상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⑤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판단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함.

-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조례의 법령·헌법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하고, 법준수도를 고양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갈등 및 법적 분쟁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의 법령·헌법합치성 및 형식적 완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조례,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Article 117 Paragraph (1)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Local governments ...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Act based thereon also stipulates that “Local governments may enact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is confirms the principle of precedence of acts in unmistakable terms, but there are quite a few municipal ordinance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conflict with laws.
- According to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must have authorization by acts when they make provisions on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 of residents’ rights or imposition of obligations on residents or make provisions on punishment. However, such provisions are sometimes made without authorization by acts.
- Some municipal ordinances use every so often unclear terms or phrase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or provide for matter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self-responsibility.

- Some municipal ordinances fall short of formal completeness in usage of terms or composition of sentences, or do not conform with the Easy-to-understand Guideline for Improvement of Laws or the Manual for Draft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published by the Office of Legislation.
- Such municipal ordinances mentioned above could bring about unnecessary friction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spawn distrust in local governments, hinder smooth performance of local administration and cause disbenefit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residents and imposition of new obligations on them.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level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residents, strengthen the rule of law in local administration and seek ways to heighten conformity of ordinances with laws and the constitution, by way of improving those current municipal ordinances which 1) provide matters contrary to higher-level laws, 2) provide for,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by acts, matters concerning rights or obligations of residents or punishments against them, 3)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by using unclear terms or phrases, 4)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self-responsibility, or, 5) do not conform with the Easy-to-understand Guideline for Improvement of

Laws or the Manual for Draft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published by the Office of Legislation.

II. Main Content

- In Chapter 2 of this study, the scope and limits of local government's power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have been looked at as the criteria for judging and strengthening conformity of ordinances with laws and the constitution.
- In Chapter 3 through Chapter 5, cases of subjec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ound by research area, and their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have been suggested.
- In Chapter 6, the current status of the cases found has been explained briefly, and the ways for strengthening conformity of ordinances with laws and the constitution have been suggested.

III. Expectations

-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residents will be ensured and compliance with laws will be enhanced.

- It is expected that arbitrary implementation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will be prevented and clarit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friction, discord and legal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prevented.
- It is expected that conformity of ordinances with laws and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ir formal completeness will be enhanced.

➤ **Key Words :** Municipal Ordinanc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2. 연구의 구성	26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9
제 1 절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관계	30
1. 의 의	30
2. 법률선점이론의 검토	32
3.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34
제 2 절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의 관계	36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36
2.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권익침해조례의 효력	37
제 3 절 조례와 벌칙의 관계	37
제 4 절 조례의 헌법상 일반원칙의 준수	39

제 3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43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43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43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76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92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10
5.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15
6. 기 타	118
제 2 절 산업·자원 관련 분야	163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63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67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70
4. 기 타	182
제 4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193
제 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193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93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206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216
4. 기 타	226

제 2 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239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39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272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299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317
5.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319
6. 기 타	322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345
제 1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345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345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355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368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378
5. 기 타	381
제 2 절 환경 관련 분야	406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406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411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37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441
5. 기 타	446

제 6 장 결 론 477

참 고 문 헌 487

《부 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4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나아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한 것은 지방자치 행정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적 차원에서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권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체도가 출범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등 여러 면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른 행정의 처리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 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의 행사로서의 조례는 당연히 국가 최고 의사로서의 법률과 그에 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처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조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밖에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자치입법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전체 법질서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법 질서의 통일성·조화성을 저해할 수 있다.¹⁾

또한 최근 외국인 투자 확대나 외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조례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법제실무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중에는 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조례의 수준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례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개조식 요약서, i ~ ii.

이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③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④ 헌법상 비례의 원칙, ⑤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⑥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총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연 번	연구대상 자치단체명	연 번	연구대상 자치단체명
1	서울특별시	9	경기도
2	부산광역시	10	강원도
3	대구광역시	11	충청북도
4	인천광역시	12	충청남도
5	광주광역시	13	전라북도
6	대전광역시	14	전라남도
7	울산광역시	15	경상북도
8	세종특별자치시	16	경상남도

연 번	연구대상 자치단체명	연 번	연구대상 자치단체명
		1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① 국토·교통 관련 분야, ② 산업·자원 관련 분야, ③ 보건·복지 관련 분야, ④ 농수축산 관련 분야, ⑤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⑥ 환경 관련 분야로 나누어 해당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 조례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국토·교통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등 70건
	산업·자원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
	보건·복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등 33건
	농수축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등 6건
	문화·체육·관광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등 9건
	환 경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등 28건
소계 154건		
부산광역시	국토·교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3건
	산업·자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9건
	보건·복지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등 27건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농수축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8건
	문화·체육·관광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18건
	환 경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0건
소계 135건		
대구광역시	국토·교통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등 45건
	산업·자원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등 11건
	보건·복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19건
	농수축산	「대구광역시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진흥 조례」 등 12건
	문화·체육·관광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등 7건
	환 경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14건
소계 108건		
인천광역시	국토·교통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등 61건
	산업·자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등 14건
	보건·복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35건
	농수축산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등 8건
	문화·체육·관광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등 19건

제1장 서론

지방자치단체	분야	연구대상 조례
	환경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등 28건
소계 165건		
광주광역시	국토·교통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등 58건
	산업·자원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등 14건
	보건·복지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등 36건
	농수축산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등 14건
	문화·체육·관광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5건
	환경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등 22건
소계 169건		
대전광역시	국토·교통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등 40건
	산업·자원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건
	보건·복지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 등 25건
	농수축산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5건
	문화·체육·관광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등 13건
	환경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등 18건
소계 109건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울산광역시	국토·교통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4건
	산업·자원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6건
	보건·복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14건
	농수축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등 10건
	문화·체육·관광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등 12건
	환 경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 18건
소계 94건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등 37건
	산업·자원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4건
	보건·복지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25건
	농수축산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등 17건
	문화·체육·관광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등 11건
	환 경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22건
소계 116건		
경기도	국토·교통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41건
	산업·자원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7건

제1장 서론

지방자치단체	분야	연구대상 조례
	보건·복지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등 34건
	농수축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 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1건
	문화·체육·관광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4건
	환경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 조례」 등 29건
소계 166건		
강원도	국토·교통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등 28건
	산업·자원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건
	보건·복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22건
	농수축산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등 21건
	문화·체육·관광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등 15건
	환경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 10건
소계 104건		
충청북도	국토·교통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등 26건
	산업·자원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등 7건
	보건·복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건
	농수축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등 15건
	문화·체육·관광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등 13건
	환경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등 7건
소계 81건		
충청남도	국토·교통	「충청남도 건축 조례」 등 24건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산업·자원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7건
	보건·복지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등 21건
	농수축산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등 21건
	문화·체육·관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등 9건
	환 경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 14건
소계 96건		
전라북도	국토·교통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등 33건
	산업·자원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11건
	보건·복지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등 19건
	농수축산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19건
	문화·체육·관광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등 20건
	환 경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등 10건
소계 112건		
전라남도	국토·교통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1건
	산업·자원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10건
	보건·복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7건
	농수축산	「전라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건

제1장 서론

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문화·체육·관광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16건
	환 경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 조례」 등 13건
소계 124건		
경상북도	국토·교통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27건
	산업·자원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8건
	보건·복지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등 22건
	농수축산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등 21건
	문화·체육·관광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등 12건
	환 경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14건
소계 104건		
경상남도	국토·교통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34건
	산업·자원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등 13건
	보건·복지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등 25건
	농수축산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5건
	문화·체육·관광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등 16건
	환 경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14건
소계 127건		
제주 특별자치도	국토·교통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등 51건
	산업·자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5건

지방자치단체	분 야	연구대상 조례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8건
	농수축산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1건
	문화·체육·관광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등 28건
	환 경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5건
소계 188건		
총계 16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2,145건		

※ 조사 대상 조례는 2015. 1. 15.자를 기준으로 함

※ 행정기관·산하기관 등 조직 설치 및 운영, 지방의회 설치 및 운영, 공무원 제도,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제외함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조례전수조사를 실시,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앙부처 소관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동일·유사한 조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를 표를 이용하여 정리했고, 이를 부록으로 제시했다.

조사 분석 대상 조례의 선정기준일은 조례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했으며, 연구의 시작단계인 2015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후 해당 조문이 개정된 조례의 경우에는 개정조례를 고려하여 분석했다.

이후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크게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④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⑤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⑥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로 나누어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이론 및 실무 관련 전문가의 개별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사례 발굴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했다.

다만,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는 글자 그대로 조례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거나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단지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합법성·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그 조항의 내용을 합법적·합헌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조례 조문이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충실하여 합법적·합헌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사전적·예방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 조항의 위법성·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등을 검토하는데 그친다.²⁾

2. 연구의 구성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부터 제5장³⁾까지는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2) 박영도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 2012, i.;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34쪽.

3) 보고서 장, 절 구성의 편의상 국토·교통 관련 분야와 산업·자원 관련 분야(제3장),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농수축산 관련 분야(제4장),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와 환경 관련 분야(제5장)를 각각 1개의 장으로 묶은 뒤, 다시 분야별로 절로

분야별로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④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⑤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⑥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조례의 법령·헌법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누어 조례 정비사례를 발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인 조례는 1991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고)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제22조)을, 그 장(長)에게 규칙제정권(제23조)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자치행정의 구조적 요소로서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에 속한다.⁴⁾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자기책임적 사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치입법권의 충실한 보장은 지방자치 보장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라 할 것이다.⁵⁾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 된다.⁶⁾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함으로써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당사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고유책임으로 판단하게 하여 이로써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간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힘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기본적 의미가 있다.⁷⁾

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59쪽.

5)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공법연구 제3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7. 12, 45쪽.

6) Vgl. E. Schmidt-Aßmann, Die kommunale Rechtsetzung im Gefüge der administrativen Handlungen und Rechtsquellen, 1981, S. 5. 조성규, 앞의 논문, 45-46쪽 재인용.

7) R.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1996, S. 2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59쪽 재인용.

자치입법권은 자치행정권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나,⁸⁾ 다만, 헌법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⁹⁾ 지방자치단체가 정립하는 법규범인 조례에 대하여는 헌법 및 법령에 의한 제약이 존재하며, 그 제약은 조례의 내용·제정절차 양면에 걸치는데,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¹⁰⁾

제 1 절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관계

1. 의 의

조례는 법적으로 보면 국법의 피조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법령에 위반할 수 없고,¹¹⁾ 국가 법령의 조례에 대한 우위는 통일적인 국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된다.¹²⁾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된다.¹³⁾ 조례는 효력의 관점에서 법률·명령보다 낮고,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¹⁴⁾¹⁵⁾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은 “조례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

8) H. Pagenkopf, Kommunalrecht, Bd. I, 1975, S. 8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59쪽 재인용.

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59쪽.

10) 斎藤誠, 現代地方自治の法的基層, 有斐閣, 2012, 286頁.

11)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15, 84쪽.

12) 박근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180쪽.

13) 대판 2000. 11. 24, 2000추29; 대판 1997. 4. 25, 96추244;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08쪽; 조성규, 앞의 논문, 46쪽 각주 26.

14) 김동희, 앞의 책, 84쪽.

15) 戸波江二, 法律と条例における抵触の判断方法 - 神奈川県臨時企業税条例と地方税法の定める法人事業税との関係, 早法 87卷 4号, 2012, p. 3.

서'란 법률이 조례의 소관사항을 지정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지방자치법」을 이 조례 소관사항을 지정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또는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¹⁶⁾¹⁷⁾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조례뿐 아니라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자주조례(고유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¹⁸⁾¹⁹⁾

여기서 '법령'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²⁰⁾뿐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된다.²¹⁾ 판례에 의하여 법규성이 인정되는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 중 법령의 위임을 받아 발령되는 행정규칙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라 할 것이다.²²⁾

16) 대판 2004. 7. 22, 2003추51; 대판 2002. 4. 26, 2002추23 등.

17)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판 2009. 4. 9, 2007추103; 대판 2002.1 4. 26, 2002추23.

18) 일본의 통설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 有斐閣, 2013, 188-189頁.

19) ‘법률의 범위 내에서’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표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양자는 같은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법률의 수권에 따라 제정된 명령은 법률의 구체화라고 생각되므로 일본국헌법 제94조가 말하는 ‘법률’은 그 위임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고 한다. 宇賀克也, 前掲書, 190頁.

20) 다만, 일본에서는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의 ‘법령’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한정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宇賀克也, 前掲書, 190頁.

2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12, 30쪽.

22)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앞의 책, 32쪽; 헌법재판소가 현재결 2002. 10. 31,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립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2. 법률선점이론의 검토

조례는 국가의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²³⁾ 그런데 행정실체에 있어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경우, 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률선점이론(=국법선점이론)이 문제된다.²⁴⁾

법률선점이론이란 “법률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규율하는 영역에 대하여 조례가 다시 동일한 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률이 이미 선점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²⁵⁾는 이론 또는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사항은 그 자체로 필요·충분한 규제이므로 중복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의 선점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²⁶⁾는 이론을 말한다. 법률선점이론은 일본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온 이론으로서²⁷⁾ 법률선점론을 엄격하게 이해하면 국가가 어느 분야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같은 목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는 조례는 위법하게 되고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09쪽 각주 1.

23) 阿部泰隆, 行政法解釋學, 有斐閣, 2008, 288頁.

24) 조성규, 앞의 논문, 46쪽.

2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5, 153쪽 각주 4; 최철호,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5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9, 346쪽. 일본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는 선점영역이 넓게 이해되었고, 법률이 조례보다 늦게 제정되더라도 법률이 우선하므로 ‘법률선점론(法律專占論)’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阿部泰隆, 行政の法システム(下), 有斐閣, 1997, 727頁.

26) 조정환, 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와의 관계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384쪽; 최우용, 국가법령과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관계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국가법학회 2015년 하계 학술대회, 한국국가법학회, 2015. 7. 9, 37쪽.

2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09쪽 각주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²⁸⁾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고 법률의 규제로는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공해방지조례로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정하는 예가 나타나게 되었다.²⁹⁾ 고전적 법률선점론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위법 무효가 되지만, 국가의 공해행정이 계속해서 뒤떨어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도적 시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법률선점론으로 이것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에는 비판이 강했고, 법률선점론이 동요하게 되었다.³⁰⁾

오늘날에는 조례의 자주적 입법성의 결과 법률선점론의 완화를 통해 조례제정권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³¹⁾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 대법원 판례³²⁾는 조례의 법령에의 위반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해당 법령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때에는 조례에 의한 별도의 규율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28) 宇賀克也, 前掲書, 191頁.

29) 宇賀克也, 前掲書, 191頁.

30) 宇賀克也, 前掲書, 191頁.

31) 조성규, 앞의 논문, 46쪽.

32)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판 2000. 11. 24, 2000추29.

3.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은 ① 조례규율 대상에 관해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경우와 ② 조례규율 대상에 관해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① 조례와 법령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조례와 법령이 입법목적이 동일하지만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조례와 법령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목적도 동일한 경우에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구 분		판단기준
조례규율 대상에 관해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³³⁾³⁴⁾
조례규율 대상에 관해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와 법령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즉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함 ³⁵⁾

3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09쪽.

34) 일본에서는 조례규율 대상에 관해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으로 국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가 조례에 의한 규제를 금지하는 취지인가 조례의 자유에 맡기는 취지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조례가 법률과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을 법률이 용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된다. 兼子 仁, 条例をめぐる法律問題, 学陽書房、1978, 69頁、71頁). 예컨대, 강간죄는 전후 폐지되었는데, 그것은 국법이 단순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서 그 범죄성을 부정한 것이므로 조례로도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한다. 阿部泰隆, 行政法解釋學, 288頁.

3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09-310쪽.

구 분		판단기준
	조례와 법령이 입법 목적이 동일하지만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소위 일본에서 말하는 추가(横出し) 조례 ³⁶⁾ 의 경우)	○ 수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재정법상 문제가 없으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나, 침익적·규제적 행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³⁷⁾
	조례와 법령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목적도 동일한 경우에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일본에서 말하는 소위‘초과(上乘せ) 조례’ ³⁸⁾ 의 경우)	○ 침익적 행정에 관한 것이면 그러한 조례는 인정될 수 없음. 다만, 법령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법령은 규제의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을 용인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³⁹⁾ 이자 우리 대법원 판례 ⁴⁰⁾ 의 입장임.

36) 추가(横出し)조례는 국가의 법령과 규율대상 내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조례 또는 법률이 규율하지 아니한 대상을 규율하는 조례를 말한다. 최우용, 앞의 발제문, 39쪽; 人見 剛, 條例による地域環境制御 - 上乘せ條例と横出し條例再論, 新世代法政策研究員, Vol. 6, 2010, 294頁.

3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0쪽.

38) 초과(上乘せ)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법령과 같은 목적으로 그것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법률에서 공장설치에 대해 신고제를 취하는 경우 조례에서 허가제로 하거나 어느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법령에서 3ppm 이내로 하는 경우에 조례로 2ppm 이내로 강화하거나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宇賀克也, 前掲書, 193頁. 일본에서는 초과조례의 인정 여부는 초과조례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법령에 없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제가 배타적 최대한 규제인가, 전국적인 규율에 대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을 정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조례에 의한 초과규제를 인정하는 취지인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兼子仁, 條例をめぐる法律問題, 69頁、71頁; 戸波江二, 前掲論文, p. 3. 다만, 초과조례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최우용, 앞의 발제문, 38쪽.

3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0쪽.

40) 대판 2007. 12. 13, 2006추62; 대판 1997. 4. 25, 96추244.

구 분		판단기준
		○ 수익적 행정에 관한 것이면 법령이 정한 급부조건을 강화하는 조례는 침익적이므로 허용되지 않지만 급부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는 법령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려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임. ⁴¹⁾

제 2 절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의 관계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조례의 제정에 언제나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⁴²⁾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조례제정권을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져 왔는데,⁴³⁾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

41) 대판 2006. 10. 12, 2006추3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1쪽.

42)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은 「내각법」 제11조 등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침해유보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로 함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해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宇賀克也, 前掲書, 206頁.

43)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한 상세한 것은 김동희, 앞의 책, 86쪽 이하; 류지태·박중수, 행정법신문, 박영사, 2011, 924쪽 이하;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5쪽 이하 등 참조.

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⁴⁴⁾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법률의 위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⁴⁵⁾라고 판시하여 합헌설을 취하고 있다.

2.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권익침해조례의 효력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⁴⁶⁾ 다만,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일정 한도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된다.⁴⁷⁾

제 3 절 조례와 벌칙의 관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①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조 제1항), ② 사기나 그 밖의 부

44) 헌재결 1995. 4. 20, 92헌마264, 279 병합.

45) 대판 1995. 5. 12, 94추28.

46) 대판 2012. 11. 22, 2010두19270; 박균성, 앞의 책, 179쪽.

47) 대판 1991. 8. 27, 90누6613; 김동희, 앞의 책, 87쪽.

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제139조 제2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벌칙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구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는 3월 이하의 징역·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조례에 형사벌칙 규정권을 위임함으로써 형사벌칙 형량의 최고한도는 정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⁴⁸⁾

이에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에 대하여 조례로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일반적으로 위임했고,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 이외의 형벌을 정할 수는 없다.⁴⁹⁾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에는 조례로 벌칙을 정하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고, “조례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에 형벌을 과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한다”(구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1947년 「일본

48)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준입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일정 한도의 일반적·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는 조례규정사항이 한정되어 있고, 형량의 최고한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구체적 위임원칙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 합헌설적 주장도 있었다. 김동희, 앞의 책, 87-88쪽.

49) 김동희, 앞의 책, 87쪽.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조례로 벌칙을 정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⁵⁰⁾ 그리하여 현행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은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조례 중에 조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또는 5만엔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¹⁾⁵²⁾

제 4 절 조례의 헌법상 일반원칙의 준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관련 일반법과 개별 자치법규 관련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⁵³⁾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⁵⁴⁾ 비례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또는 과잉

50)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률에 없는 형사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처벌을 정하는 것이 국가(근대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의회제 국가)에 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 내에서의 ‘통치국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兼子 仁, 變革期の地方自治法, 岩波新書, 2012, 35頁.

51) 宇賀克也, 前掲書, 207頁.

52) 구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5항은 조례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 조례로 행정상의 질서벌로서의 과료를 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례에 기한 과료를 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 규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5만엔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하던 사항 중 조례사항으로 되고 조례에 의해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비례원칙에 비추어 조례위반에 과료를 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구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5항에 대응하는 현행 일본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은 조례위반에 대해서 종래의 형벌 외에 5만엔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것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宇賀克也, 前掲書, 206頁.

53)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앞의 책, 32쪽.

54) 대판 1997. 2. 25, 96주213.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용해서

금지의 원칙(Übermaßverbot),⁵⁵⁾ 자기책임의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⁵⁶⁾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법제실 「법제실무」에 제시된 이상의 헌법원칙에 대한 합헌성 심사기준을 조례에 대입·적용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⁵⁷⁾

구 분	주요 내용
명확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는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적용대상자에게는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을 알 수 있도록 함 ▶ 조례는 주민의 준법생활규범으로서의 의의와 법관의 재판규범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되므로, 법규범의 내용은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 예측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시민이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할 정도의 명확성을 요함 ▶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조례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 등은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특히,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더 높은 명확성이 요구됨. 다만, 지나치게 명확성의 원칙에 치중하다 보면 법의 일반성

는 아니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헌재결 1989.5.24. 89헌가37, 96 병합.

55)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56) 대판 1997. 7. 9, 97마1110.

57) 박영도 외, 앞의 보고서, 63-67쪽, 118, 205쪽.

구 분	주요 내용
	<p>원칙과 상충되어 법문의 의미가 의도하지 않게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p>
<p>비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두개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한 법익이 다른 법익을 위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고, 두 법익이 최적의 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실제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화성, ④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됨 ▶ 조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은 대안부터 탐색하여야 함. 예를 들면, 기본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제한하고, 기본권 제한의 인적·물적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획일적인 기본권 제한보다는 사안별로 차등하여 기본권 제한방법을 강구함
<p>자기책임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함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구 분	주요 내용
	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함

제 3 장 국토 · 교통/산업 · 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제 1 절 국토 · 교통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2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p>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각 호 생략)</p> <p>② <u>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p>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p>	<p>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p>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p>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p> <p>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③ <u>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2조 제2항에서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 그런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로서 그 구성·운영의 주체는 민간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는 취지와 다른 취지로 설치되는 위원회인데, 건축디자인조정 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와 같은 의제사항을 정하게 되면,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위법령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법상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대체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14조 제5항,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제11조 제3항, 「충청남도 건축기본조례」 제14조 제3항,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11조 제5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11조 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 제6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 4 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조례】 제 5 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 제3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제11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각 호 생략)

③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충청남도 건축기본조례】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각 호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각 호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 6 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정비방안

-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p> <p>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각 호 생략)</p> <p>② <u>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③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장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p> <p>제3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시 위원회에 두며, 제7조제1항제1호마목의 사항을 심의한다.</p> <p>②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43조에 따른 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p> <p>제37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② 제1항에서 지명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8조(대표자선정) 위원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0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 등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 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 또는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또는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수당)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조정 등의 신청) 분쟁전문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회의·운영세칙)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법

제 4 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건축법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 4 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건축법
<p>② <u>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u></p> <p>③ <u>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삭제 <2014.5.28.></p> <p>③ 삭제 <2014.5.28.></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법률 제12701호)으로 건축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분쟁민원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바,⁵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장은 여전히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어 건축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5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7조(설치 및 구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시마다 건축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매회 “분쟁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쟁전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며,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회의 및 운영 등) ①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58) 이세정,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10. 31, 210쪽.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 때에는 추가로 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전문위원회는 법 제102조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99조에 따라 조정안 또는 재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0조(수당)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42조(운영세칙) 분쟁전문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장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개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한다.
-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p>제 8 조(이의신청) ① <u>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를 부과받은 자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부과·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지방자치법
<p>제 4 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③ <u>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u></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p>

지방자치법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를 부과받은 자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기간 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개정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8 조(이의신청) 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를 부과받은 자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u>60</u>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 8 조(이의신청) ① ----- ----- ----- ----- <u>90</u> 일-----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4)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p>제 7 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친환경성에 관한 사항</u> 2. <u>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u>

【관련 법령 및 조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u>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u> 2. <u>보행의 안전성·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u> 3. <u>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u> 4. <u>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u> 5. <u>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①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②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한바,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7 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제 7 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p> <p>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p>	<p>③ ----- ----- -----사 항----- ----- ----- <각 호 삭제></p>

(5)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p>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p>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u>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u>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p>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p>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p>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u>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u></p>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서는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나 직원 복장 지정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경상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4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 포함)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상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 4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삭제한다.

【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삭 제></p>

(6)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p>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p>	<p>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p> <p>① (생략)</p> <p>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p> <p>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p>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다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p>	<p>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p>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p> <p>④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⑦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p>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에서는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실무심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민원의 성질도 다른 것인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14조의2 및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15조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에서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7)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u>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각 호 생략)</u></p> <p>②~⑧ (생략)</p>

【관련 법령 및 조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u>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p>	<p>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u></p> <p>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p>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후단 및 제1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23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 중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도록 한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경우 ‘건축사’에게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 제1호,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 제1항 제1호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②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대전광역시건축사회에 입회한 자 중에서 지정한 자

③ · ④ (생략)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 ④ (생략)

2) 정비방안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한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맞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수정한다.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u>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에게, 사 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하 생략)</u></p>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 ----- ----- ----- 해당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으로 ---- ----- ----- ----- ----- (이하 현행과 같음)</p>

(8)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p>제 2 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인공구조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과 공사의 시기 6. 도로의 복구방법 7. 붙임 서류 : 일반 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관련 법령 및 조문】

도로법 시행령
<p>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도로법 시행령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⑤ (생략)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서 는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① 점용의 목적, ② 점용의 장소와 면적, ③ 점용의 기간, ④ 인공구조물 또는 시설의 구조, ⑤ 공사시설의 방법과 공사의 시기, ⑥ 도로의 복구방법, ⑦ 붙임 서류 : 일반 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는 같은 영 제54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신청서를 2통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청서의 붙임 서류로는 설계도면(전자도면)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서를 2통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의 신청서 2통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1통 제출하도록 한다.

【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2 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인공구조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과 공사의 시기 6. 도로의 복구방법 7. 붙임 서류 : 일반 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p>제 2 조(점용허가 신청) ----- ----- ----- 제54조----- ----- 신청서를 ----- ----- 1. ~7. (현행과 같음)</p>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p>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p> <p>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p>③ <u>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p>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u>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숲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p>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p> <p>2. 토지의 형질변경</p> <p>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p> <p>4. 흙과 돌의 채취</p> <p>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 ·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원 · 녹지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점용기간을 하위법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점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청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시장의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이 조례 제13조 제3항에서는 공원·녹지 점용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은 삭제하고, 공원·녹지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 행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공원·녹지점용허가 기간은 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개정하여 그 기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녹지 관리청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p>	<p>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삭 제></p>

현 행	개정안
<p><u>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u></p> <p>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p> <p>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p> <p>③ <u>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현행 제2항과 같음)</p> <p><삭 제></p>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p>제 4 조(등록) ① 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5 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8조에 따른 한옥 수선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p>② <u>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15.7.1.] [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조 제1항에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이와 같은 한옥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제6조 제2항,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제17조 제2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14조 제2항,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제 6 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5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②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한옥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제17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유효기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및 용자 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제13조(등록·관리)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한옥건축 완료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규칙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②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한옥의 원형이 잘 보존되는지 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 회복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등록)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한옥의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14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한옥 소유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한옥신축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 조(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한옥 소유자 등에게 한옥 등록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옥이 신축된 때에는 해당 한옥을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정비방안

- 한옥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3)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p>제 9 조(설계반영의무 등)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재산권·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신기술 사용 제한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는 건설신기술의 지정·지정취소, 건설신기술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한 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거나 그러한 필요가 없다면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 6 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 7 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및 다른 장소로의 이동 주차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제2항 및 제8조, 「광주광역시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인천광역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6 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신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신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신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신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신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8 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신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신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신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신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신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신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신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신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신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제 8 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15.7.29.) [법률 제13109호, 2015.1.28., 일부개정] 제17조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주차 금지 및 단속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이 법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입법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

참고 입법례

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1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p>제14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p> <p>③ 한옥 소유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한옥신축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 3 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p>

1) 검토의견

-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용대상(충청북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도지사에게 충청북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이러한 한옥 등록 의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한옥 등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9호, 2014.6.3., 제정, 2015.6.4. 시행)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제10조)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전체에 대한 등록에 관해서 규정하거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 밖에 등록 대상이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 되어 있어 등록 대상 여부를 주민이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2) 정비방안

-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옥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한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전부터 존재하는 조례인데, 이 법률 제정에 따라 한옥에 관한 규율 상황이 변화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p>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에서는 공용차고지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⁵⁹⁾을 말한다. 명확성의 요청은 규범

5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4, 479쪽.

자체의 명확성, 적용가능성, 수범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다.⁶⁰⁾

- 조례의 내용은 충분히 명확하여야 하고 자명하여야 한다.⁶¹⁾ 조례의 수범자가 그 규범내용을 인식할 수 없으면, 그 조례는 명확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⁶²⁾
-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규정이 부담적·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⁶³⁾ 사용허가의 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조례에서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를 삭제한다.

60) 박영도 외, 앞의 보고서, 54쪽.

61)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44쪽.

62) R. Stober, a.a.O., S. 272; BVerfGE 5, 31 f.; 22. 346.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44쪽 재인용.

63)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108쪽.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25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방재정법」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5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금액 환수 사유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를 들고 있다.
-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⁶⁴⁾을 말한다.
-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규정이 부담적·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6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79쪽.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⁶⁵⁾ 지원금액의 환수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조례에서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2호 및 제5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호 및 제5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42조(지원금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관계기관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5)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108쪽.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정비방안

- 지원금액 환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 ⑤ 삭제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질서벌의 구성요건을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소지가 있고, 행정의 자의적 범집행을 가져와 주민과 행정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유형·방법 등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한 뒤,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4)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31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3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31조에서는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시장은 ①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촉 해제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위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삭제한다.

(5)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p>제 7 조(부담금 환급 및 추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수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감소한 경우(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시장은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된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p> <p>③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사유를 규정하면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사유로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 사이에 불평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 7 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정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원래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 7 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 ③ (생략)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 5 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정)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 5 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6 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 4 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시행규칙이 정한 복구설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2) 정비방안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6)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3조 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p>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내용이 시공 허용오차의 범위내로서 부실시공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신고접수 전에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 등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조치 계획 중인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u>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u>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3조 제5호에서는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매우 불명확한 사유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4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호,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제8조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제9조 제

1항, 「경기도 경관조례」 제8조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비방안

- 포상금 미지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7)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p>제11조(수수료 감면) ① 시와 시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기동반운 영을 위한 경우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 표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서는 시와 시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기동반운 영을 위한 경우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사유로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 사이 에 불평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전 라북도 건축 조례」 제7조 제3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 6 조(수수료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조사·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품질시험 수수료 감면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8)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시와 발주청은 「건설산업 진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⁶⁶⁾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면 적용 법령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 사이에 불평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66)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말하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로 이해된다.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21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p>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하며, <u>법이 정하는 제한 기간의 범위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u></p> <p>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p>	<p>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⑤ (생략)</p>	<p>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p> <p>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p> <p>6. ~ 21.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p>③ ~ ⑪ (생략)</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제한 기간의 범위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및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조잡 또는 부당·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조례에서 법이 정하는 제한 기간의 범위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한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제한 기간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는데, 상위법령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21조 제1항 중 “법이 정하는 제한 기간의 범위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 ----- ----- ----- -----

제 3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제한 기간의 범위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5.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12조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상북도 건축 조례
<p>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u>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u> 4.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 검토의견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12조에서는 경북도지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상북도건축위원회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를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민원을 야기했다는 것만으로 위촉을 해제하도록 하면 위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현저하게 제약당할 소지가 있다.
- 통상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으로 한정할 것만은 아니고, 행정법에도 적용되어

야 할 것인바,⁶⁷⁾ 민원은 그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을 해제 당하게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4조 제3호,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7조 제3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4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신체, 정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은 제외)
3.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위원이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 7 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제6조의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7)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136쪽.

2) 정비방안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서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u>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u> 4.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p>제12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6. 기 타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본문 생략)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본문 생략)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본문 생략)
제27조(회의) (본문 생략)
제28조(수당) (본문 생략)
제29조(운영세칙) (본문 생략)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본문 생략)
제31조(사무위임) (본문 생략)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맨 마지막 조문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사무위임에 관한 조항 앞에 행정질서벌에 관한 조항을 위치시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를 이 조례의 맨 마지막 조문으로 이동하고, 이 조문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명(條名) 중 ‘징수’라는 용어는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 7 조(양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양벌규정’이라는 조명(條名) 하에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⁶⁸⁾을 말하는바,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양벌규정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조명을 양벌규정에서 ‘지원 대상 제외’ 정도로 수정한다.

68)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503쪽.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제 7 조(양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 7 조(지원 대상 제외) (현행과 같음)

(3)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p>제 6 조(심의·자문 요청)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7 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 8 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p>
<p>제 5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2.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각 목 생략) <p>③ 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5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p> <p>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바, 사인(私人)에게 시장 소속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나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 6 조(심의·자문 요청)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 7 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제 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 8 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 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u></p>	<p><삭 제></p>

(4)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p>제 9 조(원상회복) ①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사용승인시 정한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손상·훼손한 자 2.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조경시설을 훼손한 자 <p>② 관리청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p> <p>제 7 조(민간조경시설의 사후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시설은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관리작업을 시행토록 관리책임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한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 제9조 제3항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무관한 것으로 조문 배치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인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는 행정내부적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훈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을 삭제하되,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9 조(원상회복)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p> <p>1. 건축물 사용승인시 정한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손상·훼손한 자</p> <p>2.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조경시설을 훼손한 자</p> <p>② 관리청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u>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경시설의 점검 및 행정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한다.</u></p>	<p>제 9 조(원상회복)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5)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9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p>제 9 조(판정결과에의 조치)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9조에서는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보고 의무 이행의 주체는 행정청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발주부서를 의무이행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으로서 결정권한이 없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할 것인데,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보고 의무 이행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9 조(판정결과의 조치) <u>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본 조례에 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 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u></p>	<p>제 9 조(판정결과의 조치) <u>시장은 위원 회의 판정결과를 고려하여</u>----- ----- ----- ----- ----- -----.</p>

(6)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6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광주광역시 징계양정기준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6조에서는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광주광역시 징계양정기준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실공사의 발생 정도에 따라 ~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장의 호응관계가 어색하고,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이나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될 것인바, 이 조례에서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6조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16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발생정도에 따라 광주광역시 징계양정기준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p>	<p><u><삭 제></u></p>

(7)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p>제 2 조(적용범위) ① <u>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다.</u></p> <p>② <u>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하 “시산하기관”이라 한다) 지방공사·공단과 자치구, 공공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때, 본부장은 종합건설본부의 시험능력 범위에서 시험한다.</u></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라는 조명(條名) 하에 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하 “시산하기관”이라 한다) 지방공사·공단과 자치구, 공공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때, 본부장은 종합건설본부의 시험능력 범위에서 시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하고, 그 법령·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 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조례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⁶⁹⁾

6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05쪽.

- 그런데 이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본부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훈령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게다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은 마치 조례가 법령에 우선하는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 2 조(적용범위) ①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다.</u></p> <p><u>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하 “시산하기관”이라 한다) 지방공사·공단과 자치구, 공공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u></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u>협 의뢰가 있을 때, 본부장은 종합건설본부의 시험능력 범위에서 시험한다.</u></p>	

(8)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 7 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수정계획 포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운임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전단에서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장의 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이와 같은 평가 업무는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수행하여

야 할 업무라기보다는 행정청의 업무라 할 것인바, 위원회에 평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장이 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9)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
<p>제 5 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 ①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경쟁력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경쟁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도시경쟁력 제고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6. 그 밖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 6 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는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p>제 7 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확정) 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도시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시는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도시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계획의 수립·추진(·시행)의 주체는 ‘시’가 아니라 행정청인 ‘시장’이고, 따라서 이 조례 제7조에서처럼 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도시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시장이 확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시’는 ‘시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한 부분은 시장이 확정하도록 수정한다.

【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5 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 ① <u>시는</u>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 5 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 ① <u>시장은</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6 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u>시는</u>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을 효율</p>	<p>제 6 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u>시장은</u>-----</p>

제 3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u>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 7 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확정) <u>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도시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u></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7 조(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확정) <u>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도시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쟁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확정한다.</u></p>

(10)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6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 6 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2.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7.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8.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0.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1.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 6조 제1항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계획은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재수립하는 것인바,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서는 기본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6 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1. ~ 11.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 6 조(계획의 수립) ① ----- ----- ----- 5년마다 다음-----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 · 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11)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p>제 4 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도지사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일정기간 마다 수립하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수립 기간 전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바,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경우 그 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 제3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 5 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10년마다 이를 재정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고시해야 한다.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정비방안

- 이하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안을 제시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4 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u>경기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 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u>5년마다 기본계획</u>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 4 조(기본계획) ① ----- ----- ○년마다 <u>경기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기본계획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1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p>제 6 조(디자인사업계획의 통보) 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의 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7 조(디자인업무 지원) 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디자인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디자인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의 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디자인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규정 사항은 행정내부적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훈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되,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 6 조(디자인사업계획의 통보) ①</u>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의 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②</u>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제 6 조(디자인사업계획의 통보)</u>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제 7 조(디자인업무 지원) ①</u>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디자인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u>②</u>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u>③</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p>	<p><u>제 7 조(디자인업무 지원) ①</u> (현행 제2항과 같음)</p> <p><u>②</u> 제1항-----</p>

제 3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자인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디자인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 ----- ----- ----- -----.</p>

(1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p>제 7 조(디자인업무 지원) 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디자인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디자인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디자인총괄부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각각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디자인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공공디자인 결과물은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와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과도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7조 제3항의 의미내용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p>제 3 조(사업자의 책무) ① <u>도내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운수사업자는 운행하는 차량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도내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u></p> <p>③ <u>도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는 차량 제조 사업자는 신규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공급할 수 있다.</u></p> <p>제 4 조(도지사의 책무) ① <u>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u></p> <p>② <u>도지사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제3조는 ‘사업자의 책무’라는 조명(條名) 하에 제1항에서는 도내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운수사업자에게 운행하는 차량 6년 이하의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내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는 차량 제조 사업자는 신규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라는 조명 하에 제1항에서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과연 ‘책무’ 조항의 성격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제4조 제1항의 경우는 도지사의 책무라기보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책무 조항이라기보다는 실제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차령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제3조 제1항과 운수종사자에게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의 책무’ 조항이라기보다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조항의 성격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제3조(사업자의 책무) 및 제4조(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재검토하여 책무로 규정할 사항과 실제적 의무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15)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제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p>제 6 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중교통 관련 부서의 서기관이 된다.</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도의원, 도 관련부서 공무원, 대중교통운영자, 대중교통 전문가, 자동온도조절장치개발자 등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p> <p>가. 차량 제조회사와의 이 조례 내용 통보 및 협의</p> <p>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협력</p> <p>다. 대중교통운영자의 의견 청취 및 조치 사항 처리</p> <p>라.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④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가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체된다.</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1) 검토의견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도의원, 도 관련부서 공무원,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전문가, 자동온도장치개발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업무로 ① 차량 제조회사와의 이 조례 내용 통보 및 협의, ② 기술

개발에 필요한 사항 협력, ③ 대중교통운영자의 의견청취 및 조치 사항 처리, ④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은 행정청의 업무이고 이 조례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무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기보다는 행정청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실무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그 밖에 이 조례 제6조 제4항에서는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가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조례가 폐지될 것이고, 당연히 실무위원회도 해체될 것인바, 이 조항은 둘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하는 실무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업무를 재검토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사무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6)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p>부 칙</p> <p>제 2 조(경과조치) ① <u>도내 대중교통 차량을 공급하는 회사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5조 권장사항을 충족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된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이미 운행 중인 대중교통 차량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u></p> <p>② <u>도내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이 완료되고 그 장치가 시장에 공급됨과 동시에 차량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을 말하고,⁷⁰⁾ 법령을 제정·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경과조치’라고 부른다.⁷¹⁾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라는 조명 하에 제1항에서는 “도내 대중교통 차량을 공급하는 회사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5조 권장사항을 충족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하여 상용

7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516쪽.

7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552쪽.

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된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이미 운행 중인 대중교통 차량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도내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이 완료되고 그 장치가 시장에 공급됨과 동시에 차령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부칙의 입법례에서 규정하는 경과조치라기보다는 도내 대중교통 차량을 공급하는 회사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노력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본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7)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 7 조(증표관리 등) 증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검토의견

-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7조에서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조례사항과 규칙사항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 주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발해져야 하며, 집행기관에 의한 규칙으로 발해져서는 아니 되고, 조례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지방자치법 제23조), 이러한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다.⁷²⁾
-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가 적용되어야 한다.⁷³⁾
-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는 주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72)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30-331쪽.

7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31쪽.

규칙으로 바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정비방안

-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의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증표의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에 관해서 규정하는 현행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안을 제시한다.

【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제 7 조의2(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p> <p>① 도지사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제 3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5. <u>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한 경우</u></p> <p>6. <u>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u></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18)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p>제 9 조(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의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 제1항에서는 저상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개선계획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군수의 재정지원 등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조례이므로 도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장·군수에게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 제3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 9 조(저상버스 운행점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28조부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일정기준 이하의 경우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의 재정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도 조례가 아닌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 이하일 경우 재정지원 등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므로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9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p>제 9 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u> 2. <u>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해, 유형별 특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u> <p>② 제1항의 교육은 시·군별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직접 또는 권역별로 시행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시행령 제 15조에 규정된 교통이용 정보 포함)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u>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② <u>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런데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9조에서는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대강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경비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

제 2 절 산업 · 자원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16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p>제16조(솔라시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u>위원은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시의회의원, 시 교육공무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u></p> <p>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의 에너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심의 3. 지역에너지계획의 심의 4.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5.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6. <u>기금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관련 법령 및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p>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 7 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u>별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시의회의원, 시 교육공무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7조 제6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솔라시티기금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심의·조정한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16조 제3항을 수정하거나(제1안) 이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솔라시티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①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② 솔라시티 기본계획의 심의, ③ 지역에너지계획의 심의, ④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⑤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심의하는 데 있는바,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기금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상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기금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금 심의회를 설치 또는 다른 기금운영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단 제1안에 따라 조례 정비안을 제시한다.

【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16조(솔라시티 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16조(솔라시티 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시의회의원, <u>시 교육공무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u> <후단 신설></p> <p>④ ~ ⑥ (생략)</p>	<p>③ ----- -----<u>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1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p>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u>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1조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대상 건축물(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3에서는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온도관리기준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생각건대, 온도관리기준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 공개는 기업 등 주민의 입장에서 명예나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적 사항인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제22조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제22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온도관리기준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상위법률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온도관리기준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다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1조 제1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침해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0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p>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⑨ (생략)</p> <p>⑩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진흥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2. 진흥계획의 수행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구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0항 제2호에서는 “진흥계획의 수행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구가 “그 밖에 시장이 지구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밖에 시장이 지구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해제 사유는 매우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면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 제7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바, 그 해제 사유는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비록 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이 장치만으로는 이 조례 제12조 제10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확보와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진흥지구의 지정해제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제4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p>제16조(선정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u>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3.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4. <u>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u>5.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6. 지도과제에 대한 실현곤란 등으로 지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제16조에서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업체선정 제외 기준으로 제1호에서 “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를, 제4호에서는 “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불명확하고 ‘제도권 범위 외’라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매우 불명확하여 기술지도가 필요한 업체선정 제외 기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확보와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가 필요한 업체선정 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p>제 3 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 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p> <p>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설도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p>③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u>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3. <u>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u>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추천후보자 제외 사유로서 제2호에서는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3호에서는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사유는 매우 불명확하고 가치 비중립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추천후보자 제외 사유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 비록 중소기업인대상을 선정할 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이 장치만으로는 이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불명확성, 가치 비중립성, 자의성의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 제 2 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본사와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정부 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확보와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 추천후보자 제외 사유 보다 명확하고 가치중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4조 제2호 및 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p>제 4 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2.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3.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4.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1) 검토의견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 대상 제외 사유로 ①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④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⑤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유 중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정 대상 제외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역시 어떤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정 대상 제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 조(위탁의 해제·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검토의견

-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지사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p>제 7 조(제외대상) 도지사는 우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경우

1) 검토의견

-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에서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중단 사유로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들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예우 및 지원 중단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 특히 어느 정도로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 “직업병 다발”에 해당하는 것인지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7 조(제외대상)

① 도지사는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세 탈루·은닉정보가 포착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 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 조(제외대상)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 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정 대상 제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⁴⁾

74)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및 재선정 취소가 되므로(같은 조례 제20조 제1항) 예우 및 지원 중단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기 타

(1)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p>제11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담당자가 된다.</p>
<p>제12조(회의) 지원센터의 회의는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p>
<p>제 9 조(구성) 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원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원센터의 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녹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구·군의 4급 이상 공무원 3.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파견하는 공무원

【관련 법령 및 조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p>제 5 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p>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부산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담당자가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회의 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 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센터는 일종의 행정조직으로서 회의체 기관이 아닌 바, 지원센터에 두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이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 7 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입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 8 조(회의) 지원센터의 회의는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11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담당자가 된다.</u></p>	<p><삭 제></p>
<p><u>제12조(회의) 지원센터의 회의는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u></p>	<p><삭 제></p>

(2)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p>제 6 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경영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품질관련 자격 획득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p>③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품질경영 통계작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경영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 2. 일반기업 등의 품질경영 설계, 생산 판매 등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검토의견

-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라는 조문 하에 제2항에서 품질경영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항에서는 품질경영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 실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정하는

데⁷⁵⁾ 이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책무라기보다는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책무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항은 책무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01쪽.

(3)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p>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 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3.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1) 검토의견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어떤 경우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유망중소기업으로서의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만일 이 조례의 법문에 따라 동일성이 유지되어 유망중소기업으로서의 법적 혜택을 계속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재지정 신

청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알리도록 한 뒤 종전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유망중소기업으로 계속 지정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종전의 유망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p>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p>

1) 검토의견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유망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규정 사항은 행정내부적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훈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되,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u>제12조(관리)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u> <u>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u></p>	<p><삭 제></p>

제 4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제 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p>제13조(인권의 보장)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이하 생략)</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인권교육 실시의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에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이 조례 제13조는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3조(인권의 보장)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p>	<p>제13조(인권의 보장) ----- ----- -----</p>

현 행	개정안
<p>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하는 등 ----- ----- -----.</p>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p>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전문가 2. <u>보육교사 대표</u> 3. <u>보호자 대표</u> 4. 어린이집의 원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7. 삭제<2012. 12. 26> <p>③ <u>시장은 제2항제2호·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u></p> <p>④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p>제 6 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p>	<p>제 6 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p> <p>② (생략)</p> <p>③ <u>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u></p>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p><u>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 <u>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u>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u>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p>제 9 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p> <p>① · ② (생략)</p> <p>③ <u>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 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4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촉 위원 중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위

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위촉위원은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데, 위 조례 제4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시장의 위원 위촉 방법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바,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또한 상위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시장의 간사 지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7조 제2항 단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7조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 조례」 제4조 제3항 및 「강원도 보육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5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6.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7.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③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④ 시장은 제2항제3호 이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인원과 자격 등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 8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제 2호부터 제 5호의 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 2. 어린이집 원장
- 3. 보육교사 대표
- 4. 보호자 대표
-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 7 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이 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세종특별자치시 보육 조례】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사회복지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강원도 보육 조례】 제 4 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대표
4.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공무원

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의 보육교사 대표와 제4호중 보호자 대표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관계공무원은 도의 보육담당국장과 시·군 보육업무담당과장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비록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 어떤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다른 집행기관이 침해하도록 하는 내용, 지방의회가 그 고유권한을 포기하게 하거나 지방의회에게 일임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서는 아니 될 것인바,⁷⁶⁾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4 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제2호·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p> <p>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p>제 4 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76) 최우용, 앞의 발제문, 42쪽.

(3)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7조(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 3. (생략)4. <u>제23조 내지 제27조에 관련된 메디시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u>5. 6. (생략)
<p>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구광역시의 관련 실·국장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u>보건의료관련 산업체·단체의 임직원</u>4. <u>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 대학교수</u>5. <u>기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u> <p>③ ~ ⑤ (생략)</p>

【관련 법령 및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p>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 7 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u>별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① 대구광역시의 관련 실·국장, ②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③ 보건의료관련 산업체·단체의 임직원, ④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 대학교수, ⑤ 기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8조 제4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23조 내지 제27조에 관련된 메디시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을 수정하거나(제1안)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기금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상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기금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금 심의회를 설치 또는 다른 기금운영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단 제1안에 따라 조례 정비안을 제시한다.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9조(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p>	<p>제19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p>

현 행	개정안
<p>1. 대구광역시의 관련 실·국장</p> <p>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p> <p>3. 보건의료관련 산업체·단체의 임직원</p> <p>4.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보건의료 관련 분야 대학교수</p> <p>5. <u>기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u><신 설></u></p> <p>③ ~ ⑤ (생략)</p>	<p><u>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의사</u> · ----- ----- -----</p> <p>6.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p>제12조(교육)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이 조항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우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조항의 반대해석상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교육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의무지우고 있고(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그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 9 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질적 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 9 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매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실시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과도한 교육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서울시장이 실시하는 상담교육 등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만일 인권교육 외에 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중앙부처에 상담교육 등 실시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p>제39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2.8.17.>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위탁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기간을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기간을 규정한 것은 시장의 위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는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위탁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위탁자 선정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심사기준을 두는 것은 시장의 위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한다.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생략) <u>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u> ④ (생략)</p>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p>

(3)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6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p>제26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u>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식품안전기본법
<p>제29조(신고인 보호) <u>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6조 제3항에서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9조를 다시 규정한 것인데, 법률에서는 의무 이행의 주체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2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만 본다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새로운 규제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조례는 ‘이해관계인’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누가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의무의 대상자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문제도 있다.
-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4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비방안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6조 제3항 중 “이해관계인” 부분을 삭제한다.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6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p> <p>① · ② (생략)</p> <p>③ <u>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u>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 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는</u> ----- ----- ----- -----.</p>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p>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u></p> <p>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p>제 9 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u>삭 제 <2011.6.7.></u></p> <p>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p> <p>⑤ <u>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국민건강증진법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2011.6.7.>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금연구역의 지정이 변경 또는 해제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단순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기본적 사유를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p> <p>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or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 . <p>② (현행과 같음)</p>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33조 제4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p>제33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4. <u>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u>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 33조 제4호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을 임기 중이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장이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위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위원과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위촉해제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33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 및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p>제 8 조(수리센터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 센터 지정을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u> 2. <u>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u>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 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①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수리센터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리센터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또한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고,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떤 행위를 ‘부당행위’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강원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p>제 7 조(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관리수탁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2.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4. <u>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된 때</u>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 검토의견

-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강원도 사회복지관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지사가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관리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관리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호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2호 및 「세종특별

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3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 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위탁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비방안

- 사회복지관 관리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기 타

(1)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부 칙
제 2 조(적용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제외’라는 조명(條名) 하에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⁷⁷⁾을 말하는데, 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은 부칙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입법례에서 총칙에 두는 사항⁷⁸⁾으로서 이를 부칙에 두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7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516쪽;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199쪽.

78)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78-79쪽.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제3조 제1호 단서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3 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단서 신설></p> <p>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이상 유지</p> <p>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p>	<p>제 3 조(지원대상 등) (현행과 같음)</p> <p>1. ----- ----- 다만,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79) 및 제4호의 노숙인시설은 제외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7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은 처음부터 대상시설에서 빠져 있으므로 굳이 제외대상 시설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2)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 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시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인데, 건강음식점은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인증받은 건강음식점 이용상 차별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건강음식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비방안

- 건강음식점 우선 이용권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할 것인지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3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3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장 보칙 제38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라는 조명(條名) 하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각 법령(조례) 상호간 또는 각 법령(조례)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⁸⁰⁾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법령의 총칙 규정에 두되,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데, 이 조례의 경우에는 보칙에 두고 있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장 제38조를 제1장 총칙 제7조 정도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8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10쪽;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81쪽.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제 7 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4)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 단서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p>제 4 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p>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 단서에서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기간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의 경우보다 더 짧게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조례들 사이에 상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재계약 평가기간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하는 것이 ‘30일 전’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탁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광역치매센터 위탁의 경우 특히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으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 단서를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4 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0명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p>	<p>제 4 조(운영의 위탁) ① · 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u>30일</u>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③ ----- ----- ----- -----<u>90일</u>----- ----- ----- -----.</p>

(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p>제 8 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u>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u>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3항 본문에서는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생각건대, 비록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를 수탁재산으로 보아 위탁 취소 또는 계약 만료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청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수탁기관을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다.
-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3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8 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u>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 8 조(위탁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6)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제 3 조(실태조사)
제 4 조(노숙인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제 5 조(지원)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 2.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 3. 노숙인 건강진단 및 의료사업 4. 노숙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확보사업 5. 노숙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입소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 7 조(입소대상)
제 8 조(시설의 설치기준)
제 9 조(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0조(보고)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제14조(보조금의 정산)
제15조(보수교육)
제16조(시행규칙)

【관련 법령 및 조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p>제 1 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 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2010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다.
- 이 조례 시행 약 1년 경과 후 2011년 6월 7일자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다음 해 6월 8일부터 시행 중인바, 법률의 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정책 및 지원제도에 관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이 조례는 그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 법률의 제·개정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노숙인이 충분하게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정비방안

-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정한다.

제 2 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 3 조(지정)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p> <p>②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p> <p>③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p>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 <p>② <u>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u></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5.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u></p> <p>④ <u>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⑤ <u>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u></p> <p>⑥ <u>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⁸¹⁾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81) 이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2015.5.14. 전부개정, 2015.7.1.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조례 제5882호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를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등에 관하여 업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지 지정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 또한 이 조례 제3조 제4항에서는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3조 제4항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자를 시장으로 명시한 이 조례 제3조 제1항과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 같은 조 제2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이하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는 같은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만 정비안으로 제시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3 조(지정)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p> <p>②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p> <p>③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u>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④ 법인의 <u>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 3 조(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6조 제3항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 6 조(경매사 관리) ① · ②(생략) 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생략)</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5조(교육훈련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중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u>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u></p> <p>③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6조 제3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경매사의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경매사 교육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바, 도매시장법인에게 경매사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중교육 의무 부과 소지가 있다.
- 다만, 이 조례 제6조 제3항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직접 경매사를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그 소속 경매사에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경매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지행위가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서는 경매사 교육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후단에서 경매사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⁸²⁾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경매사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6 조(경매사 관리)</p> <p>① · ② (생략)</p> <p>③ <u>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u> <u>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u> <u>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 6 조(경매사 관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후단은 시행령 차원에서 국민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향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p> <p>③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p> <p>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p>	<p>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p> <p>1. 정 관</p> <p>2. 주주 명부</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p> <p>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p> <p>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p> <p>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p> <p>5.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u></p> <p>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④ <u>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3. 임원의 이력서</p> <p>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p> <p>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p> <p>6.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p> <p>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 지정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를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등에 관해서 업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이지 지정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 또한 이 조례 제10조 제4항에서는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10조 제4항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 밖에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 같은 이 조례 제10조 제2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후단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이하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는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만 정비안으로 제시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p> <p>③ <u>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④ <u>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0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15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u>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u>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u></p> <p>③ <u>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 ④ (생략)</p> <p>⑤ <u>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2. <u>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u> <p>⑥ (생략)</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는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보조경매참가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5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인의 경우 보조경매참가자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16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과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중도매법인을 우대할 수 있다.</p> <p>③ <u>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결과 또는 추천을 통해 재배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중도매인 종합평가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제77조(평가의 실시)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③ <u>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결과 또는 추첨을 통해 재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첨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제3항에서 우수한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면적을 우선 재배치하고, 나머지 시설사용면적은 추첨을 통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각 호 생략)</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각 호 생략)</p> <p>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삭제 <2008.12.26.></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 생략)</p> <p>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 조례 제42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2조를 삭제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u></p>	<p><u><삭 제></u></p>

제 4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u>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각 호 생략)</u></p> <p><u>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 생략)</u></p> <p><u>④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각 호 생략)</p> <p>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각 호 생략)</p> <p>③ <u>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으로 한다.</p> <p>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u>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3조에서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서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 조례 제43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3조를 삭제하고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43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u>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각 호 생략)</u> <u>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삭 제></p>

(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p>제 9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동물보호법
<p>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⑤ (생략)</p> <p>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p>⑦~⑨ (생략)</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 제1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점검결과 「동물보호법」 제15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15조 제6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 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칫 법률의 입법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8조 제2항,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 제3항 및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7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실·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6항 각 호의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제 8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등) ① 직전년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처리건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법 제15조제6항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 7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수가 2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 8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두수가 2천두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9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 9 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다만, 법 제1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9)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p>제 4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p>
<p>제14조(설치) ① <u>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어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시 어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기능 2.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3. 농어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4. 농림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조정·심의결정 5.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6.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산업연계농업 등 3농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조정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 3.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4.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선도 농어업인

5. 농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6. 농축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농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

제16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생략)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생략)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근교농업분과위원회
3. 관광농업분과위원회
4. 식품산업분과위원회
5. 임업정책분과위원회
6. 여성정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등) (생략)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p>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u>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u></p> <p>② 제1항에 따른 <u>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2. <u>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u> 3. <u>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u> <p>③ <u>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u>시·도 정책심의회</u>”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u> 2. <u>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u> 3.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u>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u>시·도 정책심의회회의의 업무를 효</u></p>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p><u>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⑥ <u>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16조(준용) <u>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정책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0조(직무)~제12조(수당 등) (생략)</p> <p>제13조(운영세칙) <u>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라기보다는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 제4장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 어업·어촌 정책심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능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구성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다.
- 예컨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시·도 지사가 되도록 하고 있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16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②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③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16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①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 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③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④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⑤ 농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⑥ 농축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농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는 시정책심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정책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18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① 농업정책분과위원회, ② 근교농업분과위원회, ③ 관광농업분과위원회, ④ 식품산업분과위원회, ⑤ 임업정책분과위원회, ⑥ 여성정책분과위원회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시정책심의회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같은 영 제10조부터 제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정책심의회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서 이를 법령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위원장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 또한 해당 조례의 법적 성격이 자치조례인지, 위임조례인지를 불명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정비방안

- 세종특별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 4 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p> <p>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p> <p>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p> <p>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제77조(평가의 실시)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u></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p>⑤ (생략)</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 ①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와 개설자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 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③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①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②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③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의 재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새로운 규제로서 국민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는 재지정과 결부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4 조(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재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p> <p>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p> <p>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p> <p>3.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p> <p>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 5 조(법인의 관리) ① <u>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u> 2. <u>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u> 3. <u>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u> 4. <u>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u> 5. <u>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u> <p>④ <u>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u></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자료 제출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허가·신고) ① ~ ③ (생략) ④ <u>중도매인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⑤ ~ ⑦ (생략)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4항에서는 중도매인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휴업신고·폐업신고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휴업신고·폐업신고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2조 제5항 및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8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2조(허가절차) ① 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을 허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중도매업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8조(휴·폐업 신고) 중도매인은 영업을 휴업·허가사항 변경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4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휴업신고·폐업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5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허가·신고) ① ~ ④ (생략)
⑤ <u>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u>
⑥ · ⑦ (생략)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5항에서는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중도매인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2조 제5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공사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본문에서는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중도매법인의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출 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중도매법인의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출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3조 제2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3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가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운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2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법인에게 필요시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중도매법인의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5조 및 제2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25조(구매자신고) ① <u>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u></p> <p>② 구매자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구매자신고 우대 조치) 시장은 구매신고자에 대하여 주차 우대, 전용주차 공간 지정, 정기적 시장 정보 제공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7조(미신고 구매자 제재) <u>시장은 구매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농수산물 이력 추적, 안전성 확보 등을 할 수 없어 유통인,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출입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5조 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6조에 대해서는 구매신고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같은 조례 제27조에서는 미신고 구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구매자신고는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만일 구매자신고에 대해서 우대 조치만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이 조례 제27조에서는 미신고 구매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입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구매자 신고 및 미신고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구매자 신고제도를 두고 신고자에 대한 우대조치,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7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특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분, 재지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7조에서는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특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분, 재지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벌점 제도는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벌점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7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만일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재지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정책적 필요가 있더라도 이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도매시장의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바, 벌점 제도를 법률상 도입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15조(상표의 사용허가) ① <u>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품목별 허가기준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6조(사용허가의 기간) ① <u>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u> ② <u>시장은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u></p>
<p>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u>시장은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u> 2.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수산가공 및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u>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u>
<p>제19조(사후관리) <u>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부산명품수산물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부산명품수산물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상표 등록한 부산명품수산물 심벌마크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와 같다.</u>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p>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u> (이하 생략)</p> <p>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u> 2. <u>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u> 3. <u>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략) 8. <u>“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u> 	<p>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⑤ (생략)</p> <p>⑥ <u>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략) 8. <u>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u>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검토의견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는 부산명품수산물 상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사용허가의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제1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수산가공 및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③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그런데 이 조례 제2조 제2호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비추어보면 부산명품수산물은 일종의 지리적표시로서 수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에 관하여는 이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제8호에서는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였는바, 적어도 부산광역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다.

- 여기서 조례규율 대상에 관해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이 문제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례와 법령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목적도 동일한 경우에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을 정하는 조례가 침익적 행정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한 조례는 인정될 수 없지만, 법령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법령은 규제의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을 용인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자 우리 대법원 판례⁸³⁾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조례 제17조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요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 각 호의 요건에 비해 강화된 측면이 있다.

2) 정비방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 외에 부산광역시 자체적으로 부산명품수산물 표시를 할 필요가 있더라도 표시의 사용허가 취소 요건은 법률의 그것에 비해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3) 대판 2007. 12. 13, 2006추62; 대판 1997. 4. 25, 96추244.

(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p>제 7 조(분석결과외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 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p>
<p>제 8 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p>
<p>제 3 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분석의뢰서에 별지 제1-1호 서식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 6 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뢰받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을 추가하여 제출받은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지2-1호 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농업에 관한 시료의 분석 의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조에서는 분석결과의 통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행해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가 의뢰된다.
- 그런데 이와 같은 광고·선전, 용기·포장 등에서의 표시 금지,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 사용 금지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라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상위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하거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분석 결과를 이용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지도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등을 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p>제19조(남도 맛 명가의 사후관리) ① 남도 맛 명가의 식품품질 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도 맛 명가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2. 지정 받은 업소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음식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p>② 남도 맛 명가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심사자료, 음식점 시설의 관리, 식품의 사용 및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남도 맛 명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남도 맛 명가 지정의 취소) 남도 맛 명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p>제21조(지위의 승계) ① 남도 맛 명가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명칭사용의 금지) ① 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② 도지사가 지정한 남도 맛 명가 이외의 업소에서는 본 조례가 정하는 남도 맛 명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9조 제1항에서는 남도 맛 명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조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남도 맛 명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남도 맛 명가 식품품질 수준의 유지남도 맛 명가 대표에게 지정심사자료, 음식점 시설의 관리, 식품의 사용 및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 비치·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 부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같은 조 제20조에서는 남도 맛 명가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같은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지 않으면 지정제도의 존속(공익)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남도 맛 명가의 사업 양·수도, 법인 합병, 상속 등에 따른 지위 승계 및 그 신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제22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남도 맛 명가 이외의 업소에서는 본 조례가 정하는 남도 맛 명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동일·유사명칭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남도 맛 명가를 지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남도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과 농어업·농어촌의 활력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정제도에 부수하여 그 사후관리나 지위 승계, 명칭사용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상위법률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1)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 7 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 방지를 위한 설비와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점검 시 제시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전라남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 방지를 위한 설비와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점검 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새로운 규제인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거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9조 제3항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19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 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p> <p>②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등록신청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p>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p> <p>④ <u>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④ (생략)</p> <p>⑤ <u>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4. <u>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이하 생략)</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9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①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산지유통인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또한 이 조례 제19조 제3항 제2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조례에서 제재처분의 요건을 새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9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19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2. <u>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u></p> <p>④ (생략)</p>	<p>제19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u> -----.</p> <p><삭 제> <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5조에서는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여 어떤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 제5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시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5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일정한 재해가 발생, 특정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손해·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배상·보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p>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제3호에서는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철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제3호를 삭제한다.

(4)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제1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p>제15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제1호에서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 7 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비방안

-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제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p>제 6 조(임기) 지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제6조에서는 명예농촌지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비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요건이 매우 불명확하여 위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농촌명예지도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장이 “수탁자가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된 때”에 위탁을 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직거래장터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전라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p>제 5 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u>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u>3. <u>그 밖에 도지사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제 7 조(정착 지원) 도지사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전라남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①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도지사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에 따라 가업승계인으로 선발되면, ①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②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③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④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용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이 조례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인의 자격요건으로서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고 가치편향적이어서 어떤 사람이 가업승계인으로 선발될 수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고 이 조례 제5조 제3호의 “그 밖에 도지사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덧붙여져 그 불명확성이 더욱 가중된다.
- 가업승계인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혜가 제공될 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나,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인 선발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불명확한 선발 기준은 가업승계인으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가업승계인 선발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5조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p>제15조(가맹사업자의 책무)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 식재료의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의 사용과 원산지 표시2. 관계 공무원의 지원 자금 사용처 조사 및 이행사항 검사에 성실히 협조3. 점포 및 식자재 위생관리 및 위생적 식품제조4. 음식점 경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성실 준수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지도하고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남도 맛 산업 가맹사업자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지도하고 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라는 요건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 가치 비중립적인바,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보조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p>제 3 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5년이상 종사하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3.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p>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자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평가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을 평가 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다.
- 그런데 이들 평가 사항은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가치 비중립적인 사항이고, 특히 “신청인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경우 자칫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평가 사항 중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3 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5년이상 종사하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3.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p>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u>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 3 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10)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p>제 5 조(지정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u>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2. 유기농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u>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경우</u>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 그런데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 주관적·가치 비중립적이어서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명인 지정 취소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20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p>제20조(지정의 취소) ① <u>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u> 2. <u>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u> 3. <u>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효력을 상실한 때</u> 4. <u>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u> 5. <u>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u>

1) 검토의견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① 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 ②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효력을 상실한 때, ④ 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⑤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지정제도의 존속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조례 제20조 제2항 제5호의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 그리고 지정 취소 시 그 위반의 태양이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도 있을 것인데 이 조례 제20조 제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상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 또한 제4호의 “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는 취소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20조 제2항 제5호는 취소사유로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일정한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호의 취소사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5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p>제14조(품질검사원) 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에서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p> <p>②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p> <p>④ 행정시장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p> <p>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p> <p>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p> <p>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p> <p>⑥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p> <p>⑦ 행정시장은 제5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p>

1)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에서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해당 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 ②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③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과장에 두는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 중 어느 품질검사원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른 품질검사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지우는⁸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더욱이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선과장의 영업 수행의 중단을 가져오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84)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136쪽.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선과장과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른 품질검사원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수행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어 더욱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위반행위를 한 품질검사원만 해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14조(품질검사원) ①~④ (생략)</p> <p>⑤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 기간 중 해당 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u>그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u>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⑥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p> <p>⑦ 행정시장은 제5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품질검사원) ①~④ (생략)</p> <p>⑤ ----- ----- ----- ----- ----- 해당 품질검사원을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6. 기 타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7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17조(매매참가인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u>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u>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3.5cm) 3매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7조 제3항에서는 매매 참가인의 신고절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는 매매 참가인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참가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실익이 없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7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 참가인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면 조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르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1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p>제21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공급안정을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u>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p>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는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서는 출하자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출하자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실익이 없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1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만일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참가인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면 조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5조(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 창구(窓口)(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p>	<p>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각 호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p>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p> <p>③ <u>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개설자가 정한다.</p> <p>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개설자가 정한다.</p> <p>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p> <p>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p>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5조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에서 이들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실익이 없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5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면 조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p>제 6 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p> <p>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p>	<p>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p> <p>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p>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p>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역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u>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p>	<p>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p> <p>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p> <p>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p> <p>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p> <p>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①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④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할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비방안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수수료의 징수 및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동물보호법」 제12조 제5항에서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4항 중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부분은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6 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u>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u>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 6 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등록수수료----- ----- ----- -----.</p>

(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인 수리 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 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농기계 부품센터(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순회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 3 조(기능) ① 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상 지역은 리·통 자연부락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

③ 순회수리반은 차량을 이용 마을단위 순회 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제 4 조(순회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사 2, 전문경력관 1(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순회수리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제 5 조(수리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② 수리 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수리요원(전문경력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6 조(순회전용차량) ① 순회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회전용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순회 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제 7 조(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종 별

비 고

경운정지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수확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방 제 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제 8 조(수리용 부품 비치 및 확보) ① 제7조의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내(부품센터)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농업기계 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질되지 않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 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고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정부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 9 조(부속품대금) ① 수리 및 부품 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일 징수한 부품대금은 시 금고에 익일 입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기계의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농가당 2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2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00원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받으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순회수리계획 수립) ①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역여건을 감안 순회수리일정(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 실시하되,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10월에 중점 실시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
-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별지 제6호 서식)
-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 원부(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① 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 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전에 읍·면장과 리장에게 통보하고 앰프 방송을 이용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제13조(현장교육) 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 원인과 관련된 핵심 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② 현장 참여 농민에게 고장 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제14조(수리곤란 기계) 현장 수리가 곤란한 농업 기계는 전문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6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는 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4조(순회수리반 편성), 제5조(수리업무의 전담 등), 제6조(순회전용차량), 제8조(수리용 부품 비치 및 확보), 제14조(수리곤란 기계), 제17조(예산계상) 등은 주로 행정내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훈령적 성격이 강하고, 그 밖의 조문들도 행정내부적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주민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규정하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지시는 규정방식을 취하여 조례가 전체적으로 훈령적 성격이 강하다.

2) 정비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중 순회수리반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내부적 사항과 주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정내부적 사항은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하고 주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 등은 문장의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제14조(품질검사원) 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에서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p> <p>②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u>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u></p> <p>④ <u>행정시장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⑤~⑦ (생략)</p>	<p>제17조(감귤품질검사원) ①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상인단체에서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대상자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p> <p>②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이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교육이수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③ 행정시장은 감귤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별 품질검사원 위촉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시장은 선물용에 대한 출하신고 등 필요시 자체 선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교육 및 보수교육은 품질검사원에게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나 규칙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또한 ‘수시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면 품질검사원 및 이를 고용한 선과장의 영업 수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조례사항과 규칙사항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 주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발해져야 하며, 집행기관에 의한 규칙으로 발해져서는 아니 되고, 조례가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지방자치법 제23조), 이러한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다.⁸⁵⁾
-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가 적용되어야 한다.⁸⁶⁾
- 따라서 품질검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시간·방법·비용 등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거나 그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뒤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경우도 ‘수시로’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

85)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30-331쪽.

86)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31쪽.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도록 하여 (보수)교육이수자 및 이를 고용한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9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제19조(품질추천제 운영) ① <u>도지사는 감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감귤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추천제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추천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2조(품질우수감귤 지정신청)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여 품질추천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생산자조직,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품질우수감귤지정신청서에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품질우수감귤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생산출하여건 개요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질우수 감귤 생산자별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3조(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 ① 품질우수감귤의 선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 없는 감귤류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4조(품질우수감귤 지정) ① 도지사가 품질우수감귤 지정시에는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임직원 등으로 심사반을 편성하고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품질우수감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②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 지정여부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우수 감귤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품질우수감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로 한다.</p> <p>④ 도지사가 품질우수감귤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우수감귤지정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p> <p>⑤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로 지정된 감귤을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상징마크의 사용) ① 품질우수감귤 생산자 등은 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상징마크를 품질우수 감귤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p> <p>② 상징마크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가 가능하며 포장재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상징마크의 제작비는 생산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제26조(품질우수감귤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품질우수감귤로 지정된 감귤이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감귤로 소비자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행정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p>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다음각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표시내용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신용을 추락시켰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주의 경고할 수 있다.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우수 감귤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된 자가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품질우수 감귤 지정서 및 상징마크가 부착 인쇄된 포장재를 회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감귤 상품에 대하여 품질추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품질추천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품질우수감귤 지정신청, 선정기준, 선정방법, 상징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정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 사항만으로는 주민이 우수 감귤 상품 품질추천제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품질우수감귤 지정신청, 선정기준, 선정방법, 상징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 지정취소 등 우수 감귤 상품 품질추천제 시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뒤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제 1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p>제 8 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이 된다.</p> <p>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④ <u>당연직 위원은 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u></p> <p>2. <u>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u></p> <p>3. <u>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u></p> <p>4. <u>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u></p> <p>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도서관법
<p>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 생략)</p> <p>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p> <p>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8조 제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1명, ② 국립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 ③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 ④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도서관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르면 위원장인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 조례 제8조 제4항은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도 「도서관법」 제24조 제4항과 달리 규정하여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8조 제4항을 「도서관법」 제24조 제4항에 맞게 규정하여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8 조(구성) ①~③ (생략)</p> <p>④ <u>당연직 위원은 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u></p> <p>2. <u>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u></p>	<p>제 8 조(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u><각 호 삭제></u></p>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3. <u>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u></p> <p>4. <u>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u></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제2항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p>제1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하다.</p> <p>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u>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u>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p>③~⑤ (생략)</p>

【관련 법령 및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p>제 7 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u>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u> 3. <u>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u>

문화예술진흥법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⑦ (생략)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제1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① 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단체, ②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를 들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②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추가적·세부적인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로 그 요건을 강

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 이 사례는 법률의 규제대상 사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추가하는 소위 ‘초과(上乘せ)조례’의 사례 또는 법률이 규제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추가하는 소위 ‘추가(横出し)조례’의 사례의 어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데⁸⁷⁾ 침익적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이 규제의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을 용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비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서 이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만일 업무의 편의·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제2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맞게 규정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7) 조례상의 어느 규제가 관계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와 동일한 대상사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한 초과규제인가, 그렇지 않고 법률상의 규제대상과는 별개의 대상사항을 규제하는 추가규제인가의 구별은 통상의 경우는 명확할 것이나, 다만 규제가 다양하므로 그 판단이 미묘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대기나 물의 오염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어느 물질에 의한 오염만이 법률상 규제되는 경우, 동일한 대기나 물에 대해서 별개의 물질에 의한 오염을 조례로 규제하는 경우 그것은 초과규제인가 추가규제인가. 같은 대기·물에의 배출에 대해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초과규제라고 이해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법정물질 이외의 오염을 배출규제의 대상으로 덧붙인 것이므로 추가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서는 규제의 ‘대상’을 일정 대기·물에의 배출로 볼 것인가, 일정 물질의 배출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론이 바뀔 것이다. 人見 剛, 前掲論文, 305頁.

(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8조 제2항 단서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p>제 8 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u>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p>제 7 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p>⑤~⑦ (생략)</p>

1)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8조 제2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지정 취소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상위법률에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기다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발했다는 것만으로 주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인 지정 취소 처분을 발령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요구되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비방안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8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8 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생략)	제 8 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 ----- ----- 한다.</p>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9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p>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9조에서는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 제19조는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서울도서관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요청 받은 자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u>요청할 수</u>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 ----- ----- 요청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p>제 8 조(우수공예품의 인증)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 3.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수공예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따라 영업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바, 이 조례에서는 그 기준·방법이나 절차 등을 직접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이 어떠한 기준·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우수공예품 인증 기준·방법이나 절차 등을 조례로 직접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한다.

(3)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p>제 7 조(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④ 시장은 명장이 제9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제고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서는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⁸⁸⁾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

88)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65쪽.

으로써 특정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⁸⁹⁾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⁹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제한(금지)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정비방안

- 명장과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는 명장 제도의 유지·신뢰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최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15.11.19.] [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이 제정·시행 중인바, 이 법에 명장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관한 위임 근거를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8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65쪽.

90)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465쪽.

(4)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p>제 7 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협의의무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게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7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 7 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 7 조(지도·감독 등) (현행 제1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p>제 9 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사용목적 및 여건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을 부득이 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이미지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1)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브랜드 슬로건(Colorful DAEGU)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목적 및 여건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을 부득이 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의 준수 의무 및 변경승인 의무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무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브랜드 슬로건 사용자에게 대해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승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브랜드 슬로건 신뢰성 확보·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p>제 5 조(평가)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성과 2. 도서 관리 및 대출 등 운영 실태 3.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4. 운영활성화 자구 노력의 정도 5. 운영비 지원금 집행 실태 <p>③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작은도서관에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 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운영비 추가 지원 2.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 3.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 4.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5. 우수한 작은도서관의 관장 · 운영위원 등에게는 포상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조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p>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p>

작은도서관 진흥법

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평가 주요 사항은 ①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성과, ② 도서 관리 및 대출 등 운영 실태, ③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④ 운영활성화 자구 노력의 정도, ⑤ 운영비 지원금 집행 실태이다.
- 작은 도서관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에는 운영비 추가 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 미이행이나 이행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의 제재가 가해진다(같은 조례 제5조 제3항).
- 그런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에 관한 사항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평가에 따른 각종 제재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평가에 따라 각종 제재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사항이므로 삭제를 검토하거나(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p>제 8 조(우수공예품의 인증)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u>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3. <u>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u>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서는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은 경우, ③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수공예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및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 제3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8 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우수업체로서 선정 당시의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우수업체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제11조(지정등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내지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광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우수업체로서의 지정 당시의 관광공예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때
3. 우수업체로서의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4. 기능보유자가 사망, 실종 생산능력 상실 또는 다른 시, 도로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공예품 인증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제 6 조(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p> <p>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u>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서는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명장 자격 상실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p>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촉직 위원은 <u>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미술작품업무 담당국장, 미술작품업무 담당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1)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는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사유로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적 근거나 행위 유형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행정측에서 위원의 위촉 시 ‘부패행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위원의 위촉 절차를 매우 번거롭게 할 소지가 있다.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9조 제3항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는 50명 내외의 미술작품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②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 건축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되 지역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미술작품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제25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업무담당국장과 건축업무담당과장)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시 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심의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민대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1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부패행위 전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 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의원 2명 이내 (이하 생략)

2) 정비방안

- 위촉직 위원의 위촉 제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4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p>제13조(위탁의 취소 등)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야외공연장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4. <u>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u>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검토의견

-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4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지사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 제2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4. 수탁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도지사가 공익상 경기장을 위탁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비방안

- 대관령 야외공연장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3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p>제17조(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①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②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같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지정제도의 존속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해제(취소)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같은 조례 제 17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4호의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지정 해제(취소)에 관한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고, 제2호의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5조(선정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남관광명품으로서의 선정가치를 잃었을 경우
2. 우수업체로서의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3.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보조금 수령 후 기간내에 개발활동을 완료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이나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정이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주관광명품과 제주관광명장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잃었을 경우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제주관광명장이 사망·실종·생산능력 상실 또는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경우

5.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이나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지정 해제(취소)사유로서 과다하고 제2호는 매우 불명확하므로 삭제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기 타

(1)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p>제 6 조(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 7 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 규정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p>제 5 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같은 조례 제6조 규정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시장이 ‘설치’한 조직에 대해서 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 ②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것, ③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행정조직 설치’의 법리와 ‘지정’ 또는 ‘위탁’의 법리를 혼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는 국제회의산업육성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편,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는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담조직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통령령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자치단체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법령상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7조 제5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p>제17조(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서울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p> <p>②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도서관의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p> <p>③ 서울도서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④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도서관장이 시행한다.</p> <p>⑤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7조 제5항에서는 서울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거나 시장 또는 서울도서관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다.

2) 정비방안

- 서울도서관 네트워크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인바, 조례에서 직접 정

하거나 시장 또는 서울도서관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 제5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p>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미술작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장은 공공미술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미술작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비록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고, 허가권자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비방안

-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 ④ (생략)</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0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

(4)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p>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p>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제1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술작품의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한바, 미술작품의 원상회복조치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u>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삭 제></u></p> <p>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5)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p>제 4 조(적용범위)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라는 조명(條名) 하에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하고, 그 법령·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 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조례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⁹¹⁾
-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인바, 조명과 조문의 내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9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05쪽.

2) 정비방안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조명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한다.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4 조(적용범위)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6)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1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p>제17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17조에서는 시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특히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공개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에 대한 시장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⁹²⁾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반할 소지가 있다.

92) 대판 2000. 5. 30, 선고 99추85.

2) 정비방안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할 시기와 비공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p>제 8 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여러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여러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부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게 되는바, 조례에서 직접 그 인원 수를 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함이 없이 ‘여러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전문위원 위촉의 남용이나 과다를 통한 행정의 비효율이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전문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7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전문위원의 수를 ‘3인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입법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 7 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및 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 6 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p>제 9 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처용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처용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결산보고 등)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2 조(위원회 설치)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이하“처용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시민의 활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 3 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경제,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처용문화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업도시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처용문화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1)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처용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독립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데 그치는 부속기관인 위원회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그 법적 성격이 어떠한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 한 것으로 보인다.

2) 정비방안

-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하고, 위원에게 수당, 여비나 실제 지출한 경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면 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p>제 6 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교육감이 인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시·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자교육은 시·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시·군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관으로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이 조례에서 도자교육을 시·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되, 도자교육을 시·군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권한의 위탁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6 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u>시·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u></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u>경기도 한국도자재단에</u> 위탁할 수 있다.</p>	<p>제 6 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시·군 교육장 또는 경기도 한국도자재단</u>-----.</p>

(10)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 5 조(옛길 관리운영협의회)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협의회 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위임 근거 없이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조례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더라도 한 법제처 의견(법제처 2014 11 13 회신 의견 14-0200 참조)에 따르면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협의회 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 분과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향한다.

【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제 5 조의2(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 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신 설></p>	<p>제 5 조의3(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현 행	개정안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옛길을 경유하는 해당 시·군의 옛길업무 담당 과장</u> 2. <u>옛길 조성·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u> 3. <u>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과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대표</u> 4. <u>그 밖에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협의회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p>제 5 조의4(협의회 운영) <u>협회의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협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u></p>

(11)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5조(해설사)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양성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는바,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가 되려는 주민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양성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적어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환경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p><u>제 3 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m이내로 한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하수도법
<p><u>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u></p> <p><u>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에서는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m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관거로부터 30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과는 맞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 실정을 고려하여 법령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맞게 하수관로⁹³⁾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하도록 수정한다.

93) 종전에 ‘하수관거’로 표현하던 것은 2013.7.16.자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1915호, 2014.7.17. 시행)에 따라 ‘하수관로’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2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26조에서는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부담금 이외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조례 제27조는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34조 제1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3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부담금이 체납된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법원경락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26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3에 맞게 수정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조례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p>제14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2조(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시장은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야간경

광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과가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 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p>제 5 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p>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을 뿐 수도시설 손괴 등과 관련한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도시설 손괴 등과 관련한 신고 등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수도시설 손괴 등과 관련한 신고 등 의무 부과가 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

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5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p>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등(건축물 제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p>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수도법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지우고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 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 그 불응에 따른 강제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 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 그 불응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이 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p>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전용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u> 2. <u>수도사용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u> 3. <u>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하므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u> 4. <u>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u> <p>③ 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전용 급수설비폐지의 절차·기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 ①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② 수도사용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③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하므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급수설비 폐지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급수설비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등의 경우 급수설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수설비 폐지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급수설비 폐지의 필요성, 적절성, 최소침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p>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p> <p>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p> <p>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p>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u>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등(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을 체납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 될 것이다.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2) 정비방안

- 수도사용자등에게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② (생 략)</p> <p>③ <u>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u></p> <p>④ (생 략)</p>	<p>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현행과 같음)</p>

(6)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p>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u> 2. <u>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또는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u> 3. <u>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u> 4. <u>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u> 5. <u>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u> 6. <u>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 <p>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등(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①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②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또는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③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④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⑤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⑥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신고 의무 부과 및 그 불이행 시의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제재적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급수설비 사용 개시·중지·폐지 신고 등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고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처분 발령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p>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u>2. <u>급수를 도용한 자</u>3. <u>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u>4. <u>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u>5. <u>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u>6. <u>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 자</u>7. <u>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u>8. <u>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u>9. <u>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u> <p>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 ①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급수를 도용한 자,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④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⑤ 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⑥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 자, ⑦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⑧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정수처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급수설비 사용 개시·중지·폐지 신고 등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고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처분 발령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p>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p>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 설치·관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측기 설치 기준 및 봉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측기 검정 비용

부담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하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 등 설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상과 같은 계측기 설치·관리 의무, 설치 시 봉인 요청 의무, 계측기 검정 비용 부담 의무,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 등 설치 금지 등은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계측기 설치·관리 의무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무 부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9)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1)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미납의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가산금을 신설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9조 제1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가산금) ①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시장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9조(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6.20.>

2) 정비방안

-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신설에 관해서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을 삭제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20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시설설 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 하여 시장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 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②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 를 준용한다.</p>	<p>제20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삭 제></p> <p>(현행 제2항과 같음)</p>

(1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p>제 8 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제 9 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관련 법령 및 조문】

소음·진동관리법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

소음·진동관리법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⑤ 삭제 <2009.6.9.>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여기서 사전심사의 의미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음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뒤,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 수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즉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를 필요로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기보

다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그것이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⁹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제8조 제1항의 사전심사(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명령)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를 잘못 이해하여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비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입법 취지에 맞게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행정청이 사업자의 소음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 8 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삭 제>

94)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2, 122쪽; 이세정,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139쪽.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단서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p>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u>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의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도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요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p> <p>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들 사이에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차별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과태료 경감 사유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3조에서는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필요한 규제조치”는 매우 불명확하여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과연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조치가 강구될 것인지를 주민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바,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오고 주민과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2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3조,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9조 제1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2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18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규제 대상 행위 및 조치 내용을 조례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제5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p>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산정한다.</p> <p>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당해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p> <p>④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u>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p>

【관련 법령 및 조문】

하수도법
<p>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u>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u></p>

하수도법
<p><u>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u>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u>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u> <p>③~④ (생략)</p> <p>제73조(강제징수) <u>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제5항에서는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하수도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범상 점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위법률에 반할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것만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된다.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제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제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점용료) ① 시장, 구청장등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 구청장등은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법 제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는 사실상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하수도법」 제73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제5항은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⁹⁵⁾

95) 만일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정비안】

현 행	개정안
<p>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④ (생략)</p> <p>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하수도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기 타

(1)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p>제16조(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소음·진동 시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소음·진동 시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p>③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데, 법제처 질의회신의견(법제처 2014. 11. 13. 회신 의견 14-0200)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9조 제3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3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제20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13조(빛공해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제2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정비방안

- 위원장,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등 중요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1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p>제1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수도법
<p>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 5 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1조에서는 수도시설이설 등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근거 법률인 「수도법」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정비방안

- 「수도법」 개정을 통하여 수도시설이설 등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p>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업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가서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p>제22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u>법 제53조제2항제3호 본문 및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p>2. 사후환경영향조사서</p> <p>3. 약식평가서</p> <p>②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3. <u>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u>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p> <p>③ <u>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시설이 준공된 후 10년</p> <p>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u>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1)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을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서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그 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 또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3항에서는 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조례에서 자료 보존 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 역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 ①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으로 ---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 행	개정안
<p>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여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에서는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여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전문가의 책무로 볼 사항은 아니고, 수당 등 대가 없이 전문가에게 이상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서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

2) 정비방안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는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일반적인 책무조항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28조(전문가의 역할)</u>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여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5)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3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32조(환경운동 지원) 사업자는 시민·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재정의 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32조에서는 “사업자는 시민·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재정의 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32조는 조명은 ‘환경운동 지원’이지만, 그 내용은 지원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무라기보다는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업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6조 제4항,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6조 제4항 및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6조 제4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충청북도 환경 기본 조례】 제 6 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처리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 6 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 6 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와 시·군 등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2) 정비방안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32조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일반적인 책무조항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u>제32조(환경운동 지원) 사업자는 시민·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재정의 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u></p>	<p><삭 제></p>

(6)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p>제 5 조(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u>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u> 3. <u>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u> 4. <u>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u>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 반납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p> <p>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로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③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④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 제1항에서는 이상의 사유 외에 ①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

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를 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이들 지정 취소 사유를 누락하고 있다.

2) 정비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은 상위 법률의 규정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만일 조례에서 법률의 규정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다면 법률의 규정 사항의 누락에 따른 집행상의 오류, 주민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 사항을 모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5 조(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 	<p>제 5 조(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상 거부한 경우</p> <p>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p> <p>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5.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p> <p>6. 법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7. 법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7)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p>제12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협의회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는 시협의회 설치 근거 및 구성의 대강과 시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협의회 기능, 시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시협의회 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조례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법제처 의견(법제처 2014 11 13 회신 의견 14-0200 참조)에 따르면 시협회의의 기능, 시협회의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시협회의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시협회의의 기능, 시협회의의 구성, 시협회의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8)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 3 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세종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푸른세종21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3. 푸른세종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푸른세종21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 4 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가. 업무소관국장
- 나. 업무소관과장

2. 위촉직

- 가.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 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사무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활동의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세종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① 시민이 환경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조례”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푸른세종

21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다.

-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① 푸른세종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② 푸른세종21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③ 푸른세종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④ 그 밖에 푸른세종21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소관국장과 업무소관과장, 위촉직 위원으로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된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이상의 조례의 문언만 놓고 보면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협의회는 단순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니라 ① 푸른세종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② 푸른세종21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③ 푸른세종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④ 그 밖에 푸른세종21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므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래 행정청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

되는) 협의회가 대신 수행하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의 형태로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참조).

- 합의제 행정기관이건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건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⁹⁶⁾로서의 보조금(Grant, Subsidies, Entitlement)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협의회는 법적 성격이나 주민이 환경보전에 직접 참여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푸른세종21 제도화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9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31쪽 참조.

(9)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p>제 4 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위촉해제를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u>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만, 보상금 없이 자발적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 8 조(보상금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하천 보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1) 검토의견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 제4조 제5호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어떤 명예감시원은 위촉 해제하고 어떤 명예감시원은 계속

위촉할 것인지 의문인바,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같은 호 괄호 안에서는 “보상금 없이 자발적 하천환경 보전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받고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 정비방안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경기도지사는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명예감시원의 수를 줄이거나 명예감시원에게 수여하는 보상금 액수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개정안
<p>제 4 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p>	<p>제 4 조(위촉 해제) ----- ----- -----.</p> <p>1. ~ 4. (현행과 같음)</p>

제 5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현행	개정안
<p>가 위촉해제를 요구할 경우</p> <p>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p> <p>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p> <p>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p> <p>5. <u>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u> (다만, 보상금 없이 자발적 하천환경보전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삭제></p> <p>5. (현행 제6호와 같음)</p>

(10)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 제5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3 조(화학물질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대응 계획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계획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군수 등(이하 “유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관련 법령 및 조문】

화학물질관리법
<p>제 6 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화학물질관리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1)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군수 등(이하 “유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5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책의 수

립·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하위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자기의 의사 및 책임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시책의 수립·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규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조례는 위임조례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데, 이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법적 성격을 오인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 등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서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① 국토·교통 관련 분야, ② 산업·자원 관련 분야, ③ 보건·복지 관련 분야, ④ 농수축산 관련 분야, ⑤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⑥ 환경 관련 분야 총 2,145건의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③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④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⑤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⑥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사례 총 265건을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개선 대상 사례 발굴 현황>

분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국토 · 교통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32조 제2항” 등 27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등 13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등 20건 발굴
	•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21조 제1항” 1건 발굴

제 6 장 결 론

분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12조 제3호” 등 3건 발굴
	• 기 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 제3항” 등 21건 발굴
	소 계	85건
산업 · 자원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대구광역시 슬라시티 조례 제16조 제3항” 1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1조 제1항” 등 2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 등 10건 발굴
	•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호” 등 5건 발굴
	소 계	18건
보건 · 복지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 등 8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6조 제3항” 등 9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 및 제2호” 등 8건 발굴
	• 기 타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등 8건 발굴

분 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소 계	33건
농수 축산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 등 13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16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제3호” 등 11건 발굴
	•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 축산 육성 조례” 제20조 1건 발굴
	•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5항” 1건 발굴
	• 기 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등 7건 발굴
	소 계	49건
문화 · 체육 · 관광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8조 제2항 단서” 등 3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세종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5조” 등 6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등 12건 발굴
	•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제5호” 등 3건 발굴

제 6 장 결 론

분야	항 목	발굴 내용 및 건수
	•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15조” 등 13건 발굴
	소 계	37건
환 경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등 4건 발굴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13건 발굴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 등 4건 발굴
	•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8조 제5항” 등 6건 발굴
	• 기 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 제5호” 등 16건 발굴
	소 계	43건
총 계		265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 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례의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상위법령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령이 설 새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고쳐지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제 때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⁹⁷⁾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제·개정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새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새롭게 규정하는 경우,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조례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취지·의도에 반하여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의 편의상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더라도

97) 홍준형, 자치법규 통합관리의 효과, 경향신문, 2015. 8.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
최종접속 : 2015. 10. 15.

조례에서 새로운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조례로 법률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 된 위원회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 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곧바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한·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조례를 제·개정 할 때 해당 규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에 관한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한·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침해적 행정의 영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 즉 소위 ‘초과조례’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 법령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법령은 규제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을 용인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령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구제 기간을 짧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 권리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역시 중요하므로 조례로 주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구제 기간을 짧게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제기된 바 있으나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수의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거나 주민에게 등록·신고·협조·준수의무 등 작위의무나 명칭사용금지 등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거나 가산금·명단공개 등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사항이 체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거나 과징금·과태료·벌칙 등에 관한 것일 경우 법집행시 이해관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례에서 이를 새로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자치행정의 의미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의 진행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의 증대, 주민에 보다 밀접한 행정의 구현,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조례의 수명자, 즉 조례 집행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그 조례의 의미 또는 내용을 용이하게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요청일 것이다.⁹⁸⁾ 그런데 다수의 조례에서는 특히 침익적 성격의 규정에서 불명확한 용어·문장을 사용하여 조례의 의미·내용을 용이하게 헤아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의 자의 내지 편의에 맡겨 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가급적 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법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그 내용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명장 등을 지정·인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인증제도에 덧붙여 그 취소·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취소·해제 사유가 의무 위반행위의 태양·정도나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있다. 지정·인증제도에 덧붙여 그 취소·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조례 위반행위의 태양·정도, 지정·인증의 목

98) 홍정선,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및 비교법제연구사업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초발표문, 2015. 10. 15, 30쪽.

적·취지나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제재적 처분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재적 처분은 주민에게 매우 불이익한 것이므로 자기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2015년 10월 현재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는 약 9만 2천여 건에 이른다.⁹⁹⁾ 법률 등 국가법령이 약 4만 5천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국법 질서에서 차지하는 조례의 비중은 매우 크고 최근에는 조례가 법률의 제·개정을 선도하는 사례¹⁰⁰⁾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 등 조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비법률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장이 매우 복잡하고, 매끄럽지 않으며 구어체형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의 체계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그 형식적인 완결도는 매우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참고하여 용어·문장 등을 순화하고, 지방자치발전에서의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문장, 도식 등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례의 이해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ordinScNw.do?menuId=2&nwYn=3&query=>>

최종접속 : 2015.10.15.

100)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90호, 2010.7.15. 제정·시행) 제정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빗공해 방지법」(법률 제11261호, 2012.2.1. 제정·2013.2.2. 시행)이 제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상의 수권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수권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명시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보고서에서 사례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여러 개의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하나의 위임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복잡화, 이해 및 해석의 혼란, 법령 개정 사항의 신속 반영 등 입법 관리 저해, 조례 체계의 부정합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상 수권 근거를 명시하고, 위임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가급적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그 밖에 행정내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이나 행정내부적인 해석지침 등 훈령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바, 가급적 행정내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이나 행정내부적인 해석지침 등 훈령 사항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정하도록 한다.

(7)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른 규율 사항의 증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의 반영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제·개정이 빈번한 것 못지않게 조례의 제·개정 역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불필요한 마찰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입법관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입법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이 필요한바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법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2.
- _____, 행정법 II, 박영사, 2015.
-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 박영도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 2012.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4.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12.
- 이세정,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10. 31.
- _____,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공법연구 제36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7. 12.
- 최우용, 국가법령과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관계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국가법학회 2015년 하계 학술대회, 한국국가법학회, 2015. 7. 9.
- 최철호,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5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9.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 _____,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및 비교법제연구사업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발표문, 2015. 10. 15.

참 고 문 헌

_____,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5.

兼子 仁, 変革期の地方自治法, 岩波新書, 2012.

_____, 条例をめぐる法律問題, 学陽書房, 1978.

阿部泰隆, 行政法解釈学, 有斐閣, 2008.

_____, 行政の法システム(下), 有斐閣, 1997.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 有斐閣, 2013.

人見 剛, 条例による地域環境制御 - 上乗せ条例と横出し条例再論, 新世代
法政策研究員, Vol. 6, 2010.

斎藤誠, 現代地方自治の法的基層, 有斐閣, 2012.

戸波江二, 法律と条例における抵触の判断方法 - 神奈川県臨時企業税条例
と地方税法の定める法人事業税との関係, 早法 87卷4号, 2012.

E. Schmidt-Aßmann, Die kommunale Rechtsetzung im Gefüge der
administrativen Handlungen und Rechtsquellen, 1981.

R.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1996.

H. Pagenkopf, Kommunalrecht, Bd. I, 197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ordinScNw.do?menuId=2&nwYn=3&query=>>

최종접속 : 2015.10.15.

홍준형, 자치법규 통합관리의 효과, 경향신문, 2015. 8.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 최종접속 : 2015. 10. 15.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서울특별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	
4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세종	
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7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8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10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부산, 인천, 광주, 세종	
1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12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1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14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대전, 경기도	
1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북, 제주	
1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부산, 대전	
1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8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경기	
1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
2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2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22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23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2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대전	
2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북, 경남, 제주	
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2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29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30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대전, 세종	
3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북	
3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광주, 경기	
3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3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경북	
35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36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
3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38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
39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점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
40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4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
42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
4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북, 경북, 제주	
4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대구	
4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46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제주	
47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 경기, 충북, 전남, 경남	
48	서울특별시 유티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
49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
50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1. 서울특별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1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관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52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	
5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4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55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5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57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 제주	
58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9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60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산, 인천, 제주	
6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
6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인천	
63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북	
64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65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66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67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	
68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		○
69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0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대전, 경기, 충남, 전남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부산, 경기	
5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남·북, 경남·북	
6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7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주	
8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3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인천, 강원	
4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
5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
6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7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8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9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인천, 경기, 제주	
10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전남·북, 경남·북	
1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12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	
14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
15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남·북, 경남·북	
16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인천, 광주, 경기	
17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18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북, 경북, 제주	
19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20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경기	

1. 서울특별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1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2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북, 제주	
2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북, 제주	
24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25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북, 경남·북, 제주	
26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충남	
27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28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9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30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 경북, 제주	
32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33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남·북, 제주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2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6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 경남·북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부산, 광주, 경기, 제주	
3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광주	
4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 경기, 제주	
5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6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7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8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
9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 경기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인천, 광주	
4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 광주	
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7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제주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부산, 광주, 경기, 전북, 경남·북	
10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광주, 대전	
12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1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가부담금 징수조례		○
1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15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	
16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 서울특별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7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광주, 세종, 제주	
18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 충북, 전남, 경남·북	
19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북, 경남·북	
20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1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
22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	
2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24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제주	
2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제주	
26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
27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정비수가조례		○
28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부산광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북	
3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6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7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8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9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10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1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12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
13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
15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16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
17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18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19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1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남·북	
2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4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	
25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북, 경남, 제주	
26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대구, 울산, 전남, 경남·북, 제주	
27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광주, 울산, 경기	
28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인천, 광주, 울산	
29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2. 부산광역시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인천, 대전, 울산	
31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32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	
33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34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35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
36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대구, 광주	
37	부산광역시 입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 세종, 충남, 전남·북, 경북	
38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39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
40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41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42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43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울산, 제주	
4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5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46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47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4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49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50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51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남, 제주	
52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53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 대전, 세종, 전북, 경남·북, 제주	
2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대구	
4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전남, 경남	
5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6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7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8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2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광주, 세종, 경기, 경북	
3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대전, 제주	
4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대구	
6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 대전, 경기, 충북	
7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8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대전, 제주	
9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10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
1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2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13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1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15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6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7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8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19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0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세종	
21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22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광주	

2. 부산광역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3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4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25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26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27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2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경남, 제주	
3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5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6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경남, 제주	
8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 대전, 울산, 전북	
2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3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북, 경남, 제주	
4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5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대구, 대전	
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7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광주, 전남·북	
8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인천, 대전, 경기, 전북, 경북, 제주	
9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0	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11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2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 울산, 경북, 제주	
13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구, 경남, 제주	
14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남·북, 경남, 제주	
15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경남	
1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남·북, 제주	
17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	
18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북, 제주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2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	
3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 세종, 경기, 전남·북, 경남·북	
6	부산광역시 빗공해 방지 조례		
7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
8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9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제주	
10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대구	
11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전남, 경북	
12	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광주	
13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북	
14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울산	
15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16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1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19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20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구광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2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4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5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 광주, 대전, 전남, 경북	
6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7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8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9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0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
11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제정지원 조례		○
12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13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14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5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17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18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19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20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2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23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24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25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6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27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8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30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31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32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
33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5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36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37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38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
39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40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41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42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43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44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45	대구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대한보상기준에관한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광주, 울산, 충남, 전남·북, 경남·북	
2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5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 울산, 경기, 전북, 경남·북	
6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7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8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10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
11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북, 제주	
3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4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5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6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7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9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1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2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3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14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5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6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17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8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19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남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구광역시 농림수산물산업 진흥 조례		○
2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3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울산	
4	대구광역시 농촌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
5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6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7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산, 세종, 경기, 전북	
8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9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울산	
10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충남·북	
11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제주	
12	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2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4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6	대구광역시간행물판매및보급에관한조례		○
7	대구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3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인천, 대전, 울산, 세종	
4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 경북	
5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6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7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8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9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10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11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12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13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14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충북, 경남	

인천광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2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3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4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5	인천광역시 전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6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7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8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광주, 경기, 충남·충북, 전남	
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세종, 제주	
10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1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12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4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
15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16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17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18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20	인천광역시 도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경기, 경남, 제주	
2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2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2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5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26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7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8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29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인천광역시 물류발전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31	인천광역시 부동산 증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3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33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34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35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
36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37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38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
39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40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41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42	인천광역시 입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44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45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4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7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48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49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50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51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52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53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54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55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
56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57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경기,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8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		
59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충남, 전남·북, 경남·북	
60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61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산업 · 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
2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
3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6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7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
8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9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10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
1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광주	
12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북	
14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울산, 강원, 충남, 전남 · 북, 경남 · 북, 제주	

■ 보건 · 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3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광주, 경남	
6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 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7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9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남 · 북, 경남 · 북	
10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경기	
11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 충북	
1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13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4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16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
17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18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21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22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경북	
23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 울산,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북	
24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5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6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7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28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2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0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31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32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		
33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	경기	
34	인천광역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35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3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6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

4. 인천광역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7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8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
2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3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5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7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8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9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0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1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경기도	
12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13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
1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15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16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북, 경북, 제주	
17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8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
19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
2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제주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주	
6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8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9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 세종	
11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13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주	
14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경기, 전남·북	
15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16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17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 관한조례		
18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9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20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1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
2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23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24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25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26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27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경기	
28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

광주광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3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5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6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등에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7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8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9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10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11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1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충북, 전남·북, 경남	
13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14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
15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비스정류소 설치 조례		○
16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7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18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19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0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21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
2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3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		
24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25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		○
2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7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8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9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보상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31	광주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32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33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34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5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36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37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38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
39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40	광주광역시 입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1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42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43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44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45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46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47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48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경남·북	
49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50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
51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52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53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54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55	광주시 공영 유료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56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57	광주직할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58	광주직할시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2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충북	
3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세종, 전북, 제주	
4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5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대전	
6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7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경기	
8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		
9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10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		○
11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12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13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4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주광역시 건강한 읍·면 문화 조성 조례		○
2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3	광주광역시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주	
5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6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7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8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9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10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11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
12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세종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15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16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17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8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9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전남	
20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경기	
21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2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
23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24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	대전, 경남	
25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전북	
26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7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28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의 지원 조례		○
29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30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1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32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33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아인 지원에 관한 조례		○
34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35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36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
2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
3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5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5. 광주광역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6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7	광주광역시 무등산수막보호 및 육성 조례		
8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9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남	
10	광주광역시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 조례		○
11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12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13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14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전북, 경남·북, 제주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3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5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6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울산, 경기, 강원, 충남·북, 전북, 경남·북	
7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8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세종, 경기, 경남·북	
9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
11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12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조례		
13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14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
15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16	광주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17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
18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19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20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1	광주광역시 입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
22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23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4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경기, 강원, 전남, 경남·북	
25	광주광역시 호남학 진흥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세종, 전남, 제주	
2	광주광역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3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경기	
4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5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6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
7	광주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9	광주광역시 빗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10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
11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13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14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5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16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
17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8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세종, 제주	
19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20	광주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21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22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전광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4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6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
7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8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9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0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1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12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가부담금 징수조례		
1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1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1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17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1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0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2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울산	
23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2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제정보조 등 조례		
25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26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
27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8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29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3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32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33	대전광역시 주택의 증개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		
34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3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36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37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38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39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40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2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5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		
6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7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		
2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3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4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6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7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6. 대전광역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8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9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10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2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
13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4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16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강원, 제주	
17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1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19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2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23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24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25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3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4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	울산	
5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5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6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		
7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8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9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10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11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1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13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대전광역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
2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3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4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6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7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8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
10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11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12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13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1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조례		
15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16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17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18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울산광역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
2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3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4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5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6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7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8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9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0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11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2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3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4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15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16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7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8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19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20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1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22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3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24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25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6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7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28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0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31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32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33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34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2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4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5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6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세종, 전북, 제주	
4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5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6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7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8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9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0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11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12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3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7. 울산광역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4	울산광역시 현혈 권장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2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3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4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 충남, 전북, 경남	
5	울산광역시 농축수산물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6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8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9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10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2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3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4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5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6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7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8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9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10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1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
12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3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4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
6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7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8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9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10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1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12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3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14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15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6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17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18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8	세종특별자치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주	
1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1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		
2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2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4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제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25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26	세종특별자치시 입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8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30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2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3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34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증개수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36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37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주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4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
5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9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주	
1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12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8. 세종특별자치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8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9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20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21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주	
23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25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강원	○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주	
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충북	
8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충남, 전북, 제주	
9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12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충남, 전남, 경남, 제주	
13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1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강원, 충남, 전남, 경남·북, 제주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16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5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7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1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3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4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5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중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
6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7	세종특별자치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가부담금 징수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8. 세종특별자치시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1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	
13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1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16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1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2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경기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3	경기도 건축 조례		
4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5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북	
6	경기도 경관 조례		
7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8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 회계 설치 조례		
9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1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
1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13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1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1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17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18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20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21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2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3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4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5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27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30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1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3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33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34	경기도 주택조례		
3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36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
37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38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
39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40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4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3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6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7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8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10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11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
12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4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
15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	
16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7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
8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보육 조례		
10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12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13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
1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6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7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8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19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20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경북	
21	경기도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2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4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25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26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주	
27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9. 경기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9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30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31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32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33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34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강원, 충남, 경남·북, 제주	
3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북, 경남	
4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5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6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강원, 전남, 경북	
7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8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		
9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충남·북, 전남·북, 경남, 제주	
10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11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
1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	
15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
16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17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18	경기도 유기농 비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
19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20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1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전남, 경남, 제주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5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
6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8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9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10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충북, 제주	
1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1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1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5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6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7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18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제주	
19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20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1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2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24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경기, 전남·북, 경남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2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3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
4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9. 경기도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충남, 경남	
6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7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8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10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11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
12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13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1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15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16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경북	
17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경남	
1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19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20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1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2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23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
24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충북	
25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26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27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8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남	
29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강원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2	강원도 건축 조례		
3	강원도 건축기본 조례		
4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5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6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7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8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9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10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11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12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13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14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16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7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18	강원도 주택 조례		
19	강원도 주택 증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21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2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3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4	강원도 지역축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25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26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27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28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원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3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4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5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6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7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8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4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5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6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7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8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9	강원도 보육 조례		
10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11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
12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3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4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5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16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8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
19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0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1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22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충북, 전남·북, 경북	
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4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5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6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7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충북, 전북, 경북	
10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11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2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13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14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15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16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17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18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19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
20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1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2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10. 강원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5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		○
6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
7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8	강원도 문화상 조례	충남, 전남, 경남·북	
9	강원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10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11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12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13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14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강원도 단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3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4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5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	○
6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7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8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
9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10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충청북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2	충청북도 건축조례		
3	충청북도 경관 조례		
4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5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6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7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9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10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13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14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15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경북	
16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17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18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	충청북도 주택의 증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1	충청북도 주택조례		
22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4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
2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26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2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3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4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5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6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7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3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4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
5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6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7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8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9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10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11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2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
13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4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5	충청북도 농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6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7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8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9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10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11	충청북도 중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충남, 경남	
12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13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14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15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2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
3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5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6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		
7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8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		○
9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10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1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13	충청북도문화회관 운영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11. 충청북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4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5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6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7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충청남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남도 건축 조례		
2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3	충청남도 경관 조례		
4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5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9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10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11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13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14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5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16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7	충청남도 주택 조례		
18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19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1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22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3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4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12. 충청남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3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5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7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2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3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전남, 경남	
8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9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1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1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12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3	충청남도 장애인상 조례	전남	
14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5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6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7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18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20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2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4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5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6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전상 운영 조례		○
7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9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북	
11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12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13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14	충청남도 수리게 관리 조례	제주	
15	충청남도 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16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7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
18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9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0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2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2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4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5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6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12. 충청남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7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
9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3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4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6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전남, 경북	
9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10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11	충청남도 환경보전 조례		○
12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13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		
14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에관한조례		

전라북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
2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3	전라북도 건축 조례		
4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5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6	전라북도 경관 조례		
7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8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9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10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1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2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13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14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16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18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19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21	전라북도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 조례		○
22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3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4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25	전라북도 주택 조례		
26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27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28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29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13. 전라북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31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32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3	전라북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2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조례		○
3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5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6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7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8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9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10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2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4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5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6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7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8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9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11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2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13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4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5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6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17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8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19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4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5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6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		
7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8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9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
10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12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13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5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6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17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18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19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2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4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
5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7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8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9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10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1	전라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12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13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14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5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16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17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9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20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2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4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5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6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7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8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9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10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3	전라남도 건축 조례		
4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5	전라남도 경관 조례		
6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7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9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10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12	전라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13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14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5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16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17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18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9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20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2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23	전라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25	전라남도 주택 조례		
26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7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8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9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1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2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4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5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
6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7	전라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등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9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
10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3	전라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4	전라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경남	
5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6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7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9	전라남도 병원선 운용 조례		
10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11	전라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3	전라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4	전라남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14. 전라남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5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6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17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8	전라남도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19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20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 조례		○
21	전라남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2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조례		
23	전라남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24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25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26	전라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27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3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5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
6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7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
8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0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12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13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14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15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16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7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19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0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경남·북	
2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22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
23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4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
25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		
26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7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전라남도 고인돌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2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3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4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
5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6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7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9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10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11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12	전라남도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
13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4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15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16	전라남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 조례		
2	전라남도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		
3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
4	전라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5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6	전라남도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		
7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9	전라남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10	전라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		
11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12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13	전라남도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경상북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2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3	경상북도 건축 조례		
4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5	경상북도 경관 조례		
6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7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8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9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0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11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12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3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14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5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16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7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18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19	경상북도 주택조례		
20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1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2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3	경상북도건인자동차운행에관한조례		
24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25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
26	경상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27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2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5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		
6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7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2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4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5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상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7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조례		
9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10	경상북도 보육조례		
11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13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4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5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6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17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8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19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20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1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22	경상북도 현혈권장에 관한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2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3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4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5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
6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7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8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9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10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11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12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3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14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15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6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17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
18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경남, 제주	
19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20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경남	
21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2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경상북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4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5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6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7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8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9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0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11	경상북도문화상조례		
12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및포장개발에관한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4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5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7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8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
9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등에 관한 조례		
10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11	경상북도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정수 조례		○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13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14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경상남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2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3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4	경상남도 건축 조례		
5	경상남도 경관 조례		
6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7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8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조례		
9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0	경상남도 도로접용료 징수조례		
11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1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1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14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1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16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
17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1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19	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
20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2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2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3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4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25	경상남도 주택 조례		
26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27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8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9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30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31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3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3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34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2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4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
6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7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8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9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10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1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1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2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		
4	경상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5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6	경상남도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7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8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9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10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11	경상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
13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4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15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16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17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18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19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22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3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24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25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3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5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6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
7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8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9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
10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2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16. 경상남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3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14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15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16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18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19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부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		○
21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22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23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24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25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3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7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		
9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10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11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2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13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14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
15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16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 환경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4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5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7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8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9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10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1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12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13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14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

■ 국토·교통 관련 분야

순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기간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
12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
16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1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19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2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		○
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2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2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
29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3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3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3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례		
33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3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35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3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 등에 관한 조례		
37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4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4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42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
4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44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
45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46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4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4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4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5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3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
4	제주특별자치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

17. 제주특별자치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
6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
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
1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6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
13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14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17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8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19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2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
2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
28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29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30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촉진 조례		
3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3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33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34	제주특별자치도 출항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35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36	제주특별자치도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 농수축산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
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4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17. 제주특별자치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9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1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가공식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막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
1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18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
1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20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
22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2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24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26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조례		○
27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28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2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3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31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부록》 시·도별 연구대상 조례 목록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1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1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
2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22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
2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
27	제주특별자치도 축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

■ 환경 관련 분야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1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순 번	조례명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
14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1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19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2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2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2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